

202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환경부 소관
- 고용노동부 소관

2025. 6.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6. .

환경노동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환경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환경개선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고용노동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6월 23일

2. 회부일자

- 2025년 6월 2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6.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6. 30.)

상정, 축조심사 및 수정가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6. 30.)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환경부

(제안설명자 : 환경부장관 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민생안정 및 경기진작을 위한 30.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액과 집행 여건을 감안한 지출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SOC 조기 확충 등을 위해 2,4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568억원,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물환경 SOC 확충에 954억원,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인프라 조성에 30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6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물환경 부문에서 사업별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 5,473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제안설명자 :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통상 환경 악화, 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14조원에 이어 약 20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출 20.2조, 세입경정 10.3조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원입니다. 회계에 7개 사업, 2,575억원을 기금에 4개 사업, 1조 3,2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약 1조 3천억원 증액하고, 저소득 청년 등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를 30만 5천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청년 일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5개 권역(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컨소시엄 훈련(100억원 확대)과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특화훈련을 확대(7천명 규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의 대지급금(+1,508억)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용자 규모를 81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폭염 취약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150억원 추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25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도 현장수요에 맞춰 128억원 보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현안에 중점을 두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❶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에 15.2조원, ❷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❸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5.3조원을 확보하고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규모 조정 3.0조원, 추가 19.8조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 국민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SOC 조기 투자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 진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둘째,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구직급여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임.

셋째, 더불어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지출 20.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을 편성하였음. 우선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총 1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프로그램 신설과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는 등 국민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임.

또한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총 5조 4천억원 지원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총 1조 3천억원 추가 지원 및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미래 신산업분야의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임.

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을 편성하였음. 우선,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천억원을 지원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또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하여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불어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① 경기진작 (소비·투자 촉진)과 ②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 요 내 용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1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2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3 세입경정 10.3조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3.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28억원 증액된 7조 7,0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3,036억원) 감액된 12조 9,21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세입	70,476	70,476	73,468	75,378	77,006	1,628	2.2
□ 세출	125,060	125,060	129,839	132,253	129,217	△3,036	△2.3

자료 : 환경부

나. 세입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28억원 증액된 7조 7,00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입 추경예산안(회계별)]

(단위 : 억 원)

구 분	'24 본예산	'25년			증 감 (B-A)	%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합 계	70,476	73,468	75,378	77,006	1,628	2.2
○ 자체세입	13,410	13,159	13,159	13,159	-	-
▪ 벌금 및 과징금	366	365	365	365	-	-
▪ 이자 및 재산수입	489	453	453	453	-	-
▪ 잡수입	48	22	22	22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157	9,523	9,523	9,523	-	-
- 법정부담금	6,484	5,959	5,959	5,959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673	3,564	3,564	3,564	-	-
▪ 용자원금 회수	2,311	2,638	2,638	2,638	-	-
▪ 관유물대여료 등 기타	39	158	158	158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409	483	483	483	-	-
○ 일반회계 전입금	56,657	59,827	61,736	63,364	1,628	2.6

자료 : 환경부

다. 세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조 2,253억원 대비 △3,036억원(△2.3%) 감액된 12조 9,21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1) 회계별 현황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2,280억원 대비 639억원(2.9%) 증가한 2조 2,91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5조 332억원 대비 1,558억원(3.1%) 증가한 5조 1,890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2조 6,810억원 대비 70억원(0.3%) 증가한 2조 6,88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3조 2,007억원 대비 △5,303억원(△16.6%) 감액한 2조 6,70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회계별)]

(단위 : 억 원)

구 분	'24 본 예산	'25년			증 감 (B-A)	%
		본 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합 계	125,060	129,839	132,253	129,217	△3,036	2.3
○ 일반회계	22,091	22,055	22,280	22,919	639	2.9
○ 환경개선특별회계	52,945	48,986	50,332	51,890	1,558	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670	32,007	32,007	26,704	△5,303	△16.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974	25,967	26,810	26,880	70	0.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0	824	824	824	-	-

자료 : 환경부

(2) 부문별 현황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환경 부문 714억원, 수자원 부문 638억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610억원, 자연환경 부문 3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에서는 △5,302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그 외 환경일반, 물류등기타 부문에서는 변동사항 없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부문별)]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2,253	129,217	△3,036	2.3
◦ 물환경	38,824	38,824	42,148	42,991	43,705	714	1.7
◦ 수자원	21,995	21,995	21,878	22,084	22,722	638	2.9
◦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0,537	10,537	11,986	12,011	12,621	610	5.1
◦ 기후대기및환경안전	39,950	39,950	40,321	40,321	35,019	△5,302	△13.1
◦ 자연환경	8,360	8,360	7,883	8,084	8,388	304	3.8
◦ 환경일반	5,298	5,298	5,454	6,574	6,574	-	
◦ 물류등기타	96	96	169	188	188	-	

자료 : 환경부

(3)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하천정비 등 14개 사업에서 2,4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생회복 재원 마련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물환경 SOC 일부 사업에서 △5,473억원이 감액되었음.

사업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증액 내역은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4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는 사업인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575억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180억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70억원,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58억원,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개량 등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에 71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물환경 SOC사업에 총 954억원을 증액하였음.

그 밖에 훼손 탐방로 정비, 국립공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에 304억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610억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감액 내역은 최근 집행상황과 사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각각 4,6

73억원과 6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에서도 각각 70억원과 100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세부사업별)]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합 계		67,640	70,673	71,741	68,705	△3,036	△4.2
공업용수도 안정화	▪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단선관로의 복선화	93	275	275	346	71	25.8
수문조사 시설 설치 및 개선	▪ 수문조사시설(수위,강수량,강우 레이더,위성 등)의 설치, 운영, 개선	1,546	935	935	1,085	150	16.0
국가하천 정비	▪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하천 정비	6,627	6,794	7,019	7,437	418	6.0
무공해차 보급사업	▪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	23,193	22,631	22,631	17,958	△4,673	△20.6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시 보조금 지원	7,344	9,284	9,284	8,654	△630	△6.8
비점오염저 감사업	▪ 비점오염원에 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338	288	288	468	180	62.5
공공폐수처 리시설	▪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 설 신·증설 및 개선	956	1,032	1,032	1,090	58	5.6
하수처리장 설치	▪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240	8,527	8,527	9,103	576	6.8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도입	228	490	490	390	△100	△20.4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1,593	2,255	2,255	2,865	610	27.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 국립공원 시설 설치 및 정비	2,137	1,456	1,456	1,760	304	20.9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지원	529	442	442	372	△70	△15.8
하수관로 정비	▪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	12,816	16,264	17,107	17,177	70	0.4

자료 : 환경부

II. 검토의견

1. 총괄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조건에 대한 검토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6조¹⁾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경정 또는 세출예산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²⁾제1항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조건은 첫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³⁾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1)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경우, 둘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이에 더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으로 ①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것(시급성), ② 예비비 집행 또는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대처가 어려울 것(보충성), ③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적합성), ④ 당해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연내 집행가능성) 등이 있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부진이 심화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4) 2024년 1분기 1.2%,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성장한 이후, 2025년 1분기에는 △0.2%로 역성장하는 등 최근 4분기 연속 0%내외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건설투자의 경우 2024년 1분기 4.5%, 2분기 △3.3%, 3분기 △3.6%, 4분기 △4.1%, 2025년 1분기 △3.1%로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구분	2023				2024				2025_1/4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DP 기준)	0.4 (1.3)	0.7 (1.2)	0.8 (1.5)	0.5 (2.2)	1.2 (3.4)	0.2 (2.2)	0.1 (1.4)	0.1 (1.1)	-0.2(0.0)
민간소비	0.6	1	0.5	0.4	0.9	0.1	0.1	0	-0.1(0.6)
정부소비	0.9	-1.9	0.6	0.3	0	0.2	0.4	0.4	0.2(2.3)
건설투자	-1.7	-0.5	2.6	4	-0.8	-0.2	2	3.4	-0.4(-13.3)
설비투자	-0.5	6.5	-2	-0.7	6.3	-0.2	5.4	0.9	-1.5(5.8)
지식재산생 산물투자	1.2	0.7	1.3	0.5	1.1	0.8	0.4	0.7	0.3(0.9)
재고증감	0.2	-0.2	0	0.1	0.6	-0.4	0.1	-0.1	-0.1(0.5)
수출	4	-2.5	1.9	0.2	1.3	0.3	0.2	-0.1	-1.2(1.5)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환경부 사업의 경우 여건상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	4	-2	3	0.4	1.2	1.3	0.2	-1.2	-2.1(2.1)
----	---	----	---	-----	-----	-----	-----	------	-----------

주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주2) ()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

‘온실가스감축인지⁵⁾ 예산제도’란 예산과정에서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에 처음 도입되었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9월 제정)⁶⁾ 및 「국가재정법」(‘21.6월 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재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기반조성, 다배출사업 감축유도 등으로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재정⁷⁾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임⁸⁾.

5) 과거 탄소중립 논의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국가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외 아산화질소, 육불화황과 같은 온실가스도 포함될 필요성이 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변경됨.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자체 중 서울, 경기, 경남과 대전 대덕구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8)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p.11)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관련 규정 내용]

구분	규정내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제2조·제3조(2023회계연도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부터 적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산서	「국가재정법」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서	「국가재정법」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결산서	「국가재정법」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무공해차보급사업, 무공해차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이번 추경안에서는 감액하여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	52,911	44,226	44,226	37,226	△7,000	△15.8
☐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254	2,263,104	2,263,104	1,795,854	△467,250	△20.6
☐ 무공해차 충전 인 프라 구축	734,441	928,423	928,423	865,423	△63,000	△6.8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정수장에서 정수 생산시 온실가스 발생량을 고려하여 용수 전환(정수→재이용수)에 따른 감축효과를 산정⁹⁾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정량사업 중 하나임.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2025년 3,121tCO₂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0억원 감액편성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9)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온실가스 감축 산정식

구 분	산정계산식
산정식	재이용수 생산량(m ³ /년)×정수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q/m ³)×(당해년도 국고지원금/사업의 총 국고지원금)
산정내역	1) '25년도: 3121tCO ₂ eq 25년 국고지원 사업 시설 규모((m ³ /년)×온실가스 배출계수(tCO ₂ eq/m ³)×국고지원비율(25년도 국고지원금/각 사업의 총 국고지원금) 2 '26년도~ : 3121tCO ₂ eq 사업현황이 매년 변화하나, 25년도 감축량을 그대로 준용하여 산정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정 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 지 누적		
					전체 (B)	감축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	-	52,911	44,226	44,226	3,121	18,726	△8,685	△16.4
(1)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O	건 물	정 량	52,911	44,226	44,226	3,121	18,726	△8,685	△16.4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다음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정량사업 중 하나로, 환경부는 2025년도 수소차 보급을 통하여 8만 8,750tCO₂eq, 전기차 보급을 통하여 66만 7,303tCO₂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목표 보급 물량이 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임¹⁰⁾11).

[2025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 정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 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지 누적		
					전체 (B)	감축				
○무공해차 보급사업				2,334,604	2,263,104	2,243,600	756,053	4,536,318	△71,500	△3.1
(1)전기차 보급	○	수송	정량	1,734,000	1,521,770	1,521,770	667,303	4,003,818	△212,230	△12.2
(2)수소차 보급	○	수송	정량	571,350	721,830	721,830	88,750	532,500	150,480	26.3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성사업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

10) 수소차 보급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식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4,366(tCO₂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짐.

* 4,366=1.18(tCO₂eq/대·년)(승용) × 3,700대

11) 전기차 보급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식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207,654(tCO₂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짐.

* 207,654(tCO₂eq)=1.20(tCO₂eq/대·년)(승용) × 37,000대 + 5.98(tCO₂eq/대·년)(화물) × 27,300대

프라의 신속한 확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목표 보급 물량이 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정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 정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지 누적		
					전체 (B)	감축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4,441	928,423	836,446	-	-	193,982	26.4
(1)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	○	수송	정성	436,500	623,750	623,750	-	-	187,250	42.9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사업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핵심 사업들이 모두 감액 편성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환경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정된 목표 물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무공해차(전기, 수소) 시장의 자생력 증대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감액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

을 연내 집행하여 조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일반회계

(1) 공업용수도 안정화(5031-301)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공업용수도 안정화’(2017년~,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지원비율 30%) 사업은 준공 이후 내구연한(30년)이 경과한 공업용수도 노후관로를 적기에 개량하고 단선관로의 복선화를 통해 용수공급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6,600만원 대비 182억 3,600만원(196.8%) 증액된 27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억원(25.8%) 증액된 34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B)		
☐ 공업용수도 안정화	9,266	27,502	27,502	34,602	7,100	25.8

나. 사업 집행 관리 철저 및 수공의 매칭비율 준수 노력 필요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울산공업노후관 개량(3차) 사업은 1977년 준공 후 48년이 경과한 울산공업용수도(Ⅰ)의 노후관로(49.9km)를 개량하여 용수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총사업비 91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원 증액(56.9%)된 5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광양(Ⅰ) 노후관 개량 사업은 1978년 준공 후 47년이 경과한 광양공업용수도(Ⅰ)의 노후관로(63.4km)를 개량하여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사업(총사업비 2,009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원 증액(42.4%)된 17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	'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 (B)	증감	
						(B-A)	%
□ 공업용수도 안정화	13,268	9,266	27,502	27,502	34,602	7,100	25.8
·울산공업노후관 개량(3차)	2,701	-	3,339	3,339	5,239	1,900	56.9
·광양(Ⅰ)노후관 개량	10,067	-	12,275	12,275	17,475	5,200	42.4
·광양(Ⅰ) 산구노후관 개량	-	4,422	6,395	6,395	6,395	-	-
·군산공업노후관 개량	300	4,244	5,093	5,093	5,093	-	-
·아산공업(Ⅱ)복선화	200	400	200	200	200	-	-
·울산공업노후관 개량(4차)	-	200	200	200	200	-	-

울산공업노후관 개량(3차)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으로 관로 5.2km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공사 대상 중 노후관 3km를 조기에 개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3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됨.

[제2회 추경에 따른 울산공업노후관 개량(3차) 사업 변경]

구 분		기존(본예산)	변경(추경안)	증·△감
총사업비		917억원 (국고 275, 수공 642)	좌동	-
사업기간		2017 ~ 2027.12	2017 ~ 2027.9	감 3개월
급수지역		울산시, 양산시, 온산공단 등	좌동	-
사업규모		노후관 개량 45.5km, 대체관로 4.4km	좌동	-
'25 년	사업계획	관로 5.2km	관로 8.2km	증 3.0km
	예산	3,339백만원	5,239백만원	증 1,900백만원
		- 공사비 3,180백만원 - 부대비 159백만원	- 공사비 4,990백만원 - 부대비 249백만원	

자료: 환경부

또한 광양(Ⅰ) 노후관 개량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으로 관로 18.4k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공사 대상 노후관 7.8km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사기간을 7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제2회 추경에 따른 광양(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변경]

구 분		기존(본예산)	변경(추경안)	증·△감
총사업비		2,009억원 (국고 603, 수공 1,406)	좌동	-
사업기간		2018 ~ 2027.12	2018 ~ 2027.5	감 7개월
급수지역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여수국가산단 등	좌동	-
사업규모		노후관 개량 48.0km, 대체관로 15.4km	좌동	-
'25 년	사업계획	관로 18.4km	관로 26.2km	증 7.8km
	예산	12,275백만원	17,475백만원	증 5,200백만원
		- 공사비 11,690백만원 - 부대비 585백만원	- 공사비 16,643백만원 - 부대비 832백만원	

자료: 환경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2개의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¹²⁾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부진이 심화¹³⁾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12) 울산공업(Ⅰ) 노후관 3차 사업의 경우 특화단지 내 대규모 신규투자(고려아연, LS MNM 등)에 따라 온산정수장 등 시설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용수공급시설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광양(Ⅰ) 공업 노후관의 경우 용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 완료(2032년) 전까지 기존 광양공업용수도 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13) 2024년 1분기 1.2%,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성장한 이후, 2025년 1분기에는 △0.2%로 역성장하는 등 최근 4분기 연속 0%내외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건설투자의 경우 2024년 1분기 4.5%, 2분기 △3.3%, 3분기 △3.6%, 4분기 △4.1%, 2025년 1분기 △3.1%로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에 부합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2개 내역사업의 연내 집행에 큰 문제가 없도록 실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사업 예산 전액을 연내 실집행하였고,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275억 200만원 중 67.6%인 185억 9,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2023				2024				2025_1/4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DP 기준)	0.4 (1.3)	0.7 (1.2)	0.8 (1.5)	0.5 (2.2)	1.2 (3.4)	0.2 (2.2)	0.1 (1.4)	0.1 (1.1)	-0.2(0.0)
민간소비	0.6	1	0.5	0.4	0.9	0.1	0.1	0	-0.1(0.6)
정부소비	0.9	-1.9	0.6	0.3	0	0.2	0.4	0.4	0.2(2.3)
건설투자	-1.7	-0.5	2.6	4	-0.8	-0.2	2	3.4	-0.4(-13.3)
설비투자	-0.5	6.5	-2	-0.7	6.3	-0.2	5.4	0.9	-1.5(5.8)
지식재산생 산물투자	1.2	0.7	1.3	0.5	1.1	0.8	0.4	0.7	0.3(0.9)
재고증감	0.2	-0.2	0	0.1	0.6	-0.4	0.1	-0.1	-0.1(0.5)
수출	4	-2.5	1.9	0.2	1.3	0.3	0.2	-0.1	-1.2(1.5)
수입	4	-2	3	0.4	1.2	1.3	0.2	-1.2	-2.1(2.1)

주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주2) ()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최근 4년간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18,543	-	-	-	18,543	17,545 [17,545]	94.6	94.6 [94.6]	-	998
2022	12,838	-	-	-	12,838	12,838 [12,838]	100.0	100.0 [100.0]	-	-
2023	13,268	-	-	-	13,268	13,268 [13,268]	100.0	100.0 [100.0]	-	-
2024	9,266	-	-	-	9,266	9,266 [9,266]	100.0	100.0 [100.0]	-	-
2025.5.	27,502	-	-	-	18,590	18,590 [18,590]	67.6	100.0 [100.0]	-	-

주) 각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실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함
자료: 환경부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다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매칭비율인 70%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미편성한 2024년을 제외하면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예산을 연내 전액 실집행하였고,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33억 3,900만원 중 74.9%인 25억 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4,398	-	-	-	4,398	4,398 [4,398]	100.0	100.0 [100.0]	-	-
2022	4,398	-	-	-	4,398	4,398 [4,398]	100.0	100.0 [100.0]	-	-
2023	2,701	-	-	-	2,701	2,701 [2,701]	100.0	100.0 [100.0]	-	-
2024	-	-	-	-	-	- [-]	-	- [-]	-	-
2025.5.	3,339	-	-	-	2,501	2,501 [2,501]	74.9	100.0 [100.0]	-	-

주) 각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실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함
자료: 환경부

다음으로, 광양(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매칭비율인 70%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미편성한 2024년을 제외하고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예산을 연내 전액 실행하였고,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122억 7,500만원 중 87.7%인 107억 6,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실행 실적 추이를 고려할 때 증액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노후관로 개량을 통한 공업용수도 안정화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광양(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10,307	-	-	-	10,307	10,307 [10,307]	100.0	100.0 [100.0]	-	-
2022	7,444	-	-	-	7,444	7,444 [7,444]	100.0	100.0 [100.0]	-	-
2023	10,067	-	-	-	10,067	10,067 [10,067]	100.0	100.0 [100.0]	-	-
2024	-	-	-	-	-	-	-	- [-]	-	-
2025.5.	12,275	-	-	-	10,767	10,767 [10,767]	87.7	100.0 [100.0]	-	-

주) 각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실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함
자료: 환경부

둘째, 수도시설의 조기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 증가분에 대응한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비도 적시에 집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비 분담비율 준수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자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업용수도 안정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모두 국고 30%, 한국수자원공사 7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음.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재무상태나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자체 예산을 분담비율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결산 심사 당시에도 사업연도별로 분담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¹⁴⁾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부담율은 70.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14)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시행한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 등 출자 수도사업은 수도사업 집행 시 수자원공사의 매칭비율을 70%로 설정하였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칭비율보다 사업 비용을 과소하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수도사업 집행 시 당초 매칭비율인 70%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집행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음.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 수공 매칭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까지 집행금액				2025년				
	합계 (A)	국고	수공 (B)	매칭 (B/A)	합계 (C=D+E)	본예산	제2회추 경 (D)	수공 (E)	매칭 (B+E)/ (A+C)
계	195,317	57,100	138,217	70.8	71,932	27,502	34,602	37,330	65.7
울산공업 노후관(3차)	51,169	15,107	36,062	70.5	10,852	3,339	5,239	5,613	67.2
광양(Ⅰ)공업 노후관	115,961	30,931	85,030	73.3	33,746	12,275	17,475	16,271	67.7
광양(Ⅰ)공업 신규 노후관	13,486	5,318	8,168	60.6	20,194	6,395	6,395	13,799	65.2
군산공업 노후관(1차)	12,381	4,944	7,437	60.1	6,131	5,093	5,093	1,038	45.8
아산공업(Ⅱ) 복선화	2,100	600	1,500	71.4	359	200	200	159	67.5
울산공업(Ⅰ)노후관(4차)	220	200	20	9.1	650	200	200	450	54.0

주1)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편성되었음.

주2) 군산공업 노후관 개량사업의 행정절차(안전관리계획 보완)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누적 매칭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도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 예산으로 총 37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2025년도 본예산 기준 대비 매칭비율을 살펴보면 57.6%에 불과¹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1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매칭비율(70%)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울산공업노후관(3차) 개량사업에 44억 3,300만원, 광양(Ⅰ) 노후관 개량 사업에 121억 3,300만원 등 총 165억 6,600만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¹⁶⁾.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무구조¹⁷⁾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15) 2025년 본예산 275억 200만원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373억 3,000만원을 합한 전체 사업비 648억 3,200만원 중 수자원공사 사업비의 비율은 5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16) 한국수자원공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더라도 잔여 공사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의 추가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있고 2024년 이익잉여금이 3,283억원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사업비 매칭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국고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자체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분담비율(70%)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17) 2024년 말 기준 부채는 11조 9,365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527억원 증가(3.0%)하였으나, 정부 출자(4대강 3,100억원, 수도건설사업 776억원) 등 자본금이 3,876억원,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이익잉여금 등 3,283억원이 증가하는 등 2024년 말 기준 자본이 12조 1,28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159억원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4년 말 기준으로 98.4%로 전년 대비 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결산 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말	'23년 말	증감 (비율)
자 산	240,654	229,968	10,686 (4.6%)
부 채	119,365	115,838	3,527 (3.0%)
(금융부채)	87,134	84,371	2,763 (3.3%)
자 본	121,289	114,130	7,159 (6.3%)
※ 부채비율	98.4%	101.5%	△3.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5134-30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1974~, 직접) 사업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강우레이더, 하천화상감시시스템과 같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홍수 대응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설구축사업 및 수자원위성 발사를 대비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홍수·가뭄 등 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지상운영 인프라 및 활용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93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84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50억원(16.0%)이 증액됨.

[2025년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154,657	93,484	93,484	108,484	15,000	16.0
▪ AI홍수예보 시설구축	81,849	9,479	9,479	24,479	15,000	158.2

나. AI 수문관측소 개소당 설치 단가의 적정성 재검토 및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은 홍수에 취약한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확충하여 홍수 대응 빅데이터를 구축(“AI수문관측소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홍수분석 시스템을 통해 홍수예보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통합플랫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 사업예산(신규)이 편성되어 2024년까지 총 사업비로 1,234억 4,600만원이 투입되었고, 370개소의 AI수문관측소 설치가 완료되었음¹⁸⁾.

[표] AI 홍수예보시설 구축사업 실시 현황(2021~2024)

(단위 : 백만원)

주요내용	1단계			2단계	총계
	‘21년	‘22년	‘23년	‘24년	
AI수문관측소 설치	10,400 (30개소)	12,800 (38개소)	13,600 (41개소)	77,400 (260개소)	114,200 (370개소)
AI통합플랫폼 구축	-	2,500	3,346	7,048	9,246
총계	10,400	15,300	16,946	84,448	123,446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3단계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기 위한 증액분 150억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 당초 총 사업비 465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료하는 사업이었으나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예보의 중요성이 커져 2024년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 1,240억원, 2021~2023(1단계), 2024년(2단계)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6년부터 3단계 사업 실시 예정임(2026 예산안 편성 중).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 추정안 산출 내역]

- AI 수문관측소 50개소 신설 위한 증액 편성. 50개소 × 300백만원 = 15,000백만원
 - 실시설계비 : 공사비의 3.56% = 512백만원
 - 공사비 : 약 290백만원(개소당) × 50개소 = 14,393백만원
 - 시설부대비 : 공사비의 0.36% + 0.3%(조달수수료) = 95백만원

자료: 환경부

극한 호우로 인하여 홍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하천의 홍수 모니터링 및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AI 수문관측소 확대 설치가 필요하나¹⁹⁾, 신규 설치 물량을 정하는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²⁰⁾”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2025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25. 6월, 홍수피해 발생하천 316개소를 포함하여 총 474개소²¹⁾에 AI 수문관측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한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내 설치 가능한 50개소의 우선 설치를 목표로 AI 수문관측소 설치 예산 15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관련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2029년까지 230개소의 추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임.

19)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홍수피해가 발생한 하천 1,680개소 중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지 않은 하천이 1310개소로 78%에 달함.

20) 수자원법 제9조에 따라 홍수예보 등 물관리를 위해 강수량, 수위 등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1) 홍수피해 발생하천(316개소), AI 홍수예보 정확도 개선(104개소), 지하차도 인근 하천 홍수정보 제공 강화(39개소), 접경지 군부대 피해 예방 지원 등(15개소)

[표] AI 수문관측소 연차별 투자 계획(2024~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변경 ²²⁾)	2026	2027	2028	2029
개 소 수	260	50	45	45	45	45
실시설계비	2,046	512	461	461	461	461
공 사 비	72,354	14,393	12,954	12,954	12,954	12,954
시설부대비	400	95	85	85	85	85
합 계	74,800	15,000	13,500	13,500	13,500	13,500

자료: 환경부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²³⁾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 편성 이후 수립된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을 통해 AI 수문관측소 신설 물량을 확정하였고, ②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홍수피해가 발생한 하천 1,680개소 중 수문관측소가 설치되지 않은 하천이 1,310개소(78%) 달하는 등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AI 수문관측소 신설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AI수문관측소 설치사업에서는 2021부터 매년 실시설계비 집행 잔

22) 당초 2025년에는 AI수문관측소 설치 관련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계획이 없었음(2025 예산 미반영).

23)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실시설계를 전년도에 10개소 이상 미리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억 7,500만원으로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²⁴⁾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²⁵⁾.

[표] 2024 회계연도 수문자료 수집장치 실시설계비 계약(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계약명)	계약자	계약일	발주금액	계약금액	비고
수자원통신위성 수문자료 수집 안테나 구축 실시설계 용역	(주)안세 기술	'24.12.5	250	175	'25예산(신규) (235)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이 반복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된 금액과 불용 또는 이월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예산안 심사 시 연간 사업목표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도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경안으로 편성된 AI 수문관측소 설치 목표(개소수)와 개소별 실시설계 단가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2024년 예산과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동 사업 공사비의 개소당 단가를 보면, 2024년 예산안의 경우 2억 9,000만원(256개소 일괄)으로 편성되었으나 개소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소요비용을 재검

24) 수문자료 수집장치 설치사업('25년 신규사업, 내역사업: AI홍수예보시설 구축)

- (기간/예산) 2025 ~ 2027(3년), 206억원
- (주요내용) 수자원통신위성 수문자료 수집 장치 구축(4개 홍수통제소)
 - (위성통신) 위성 수문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정지궤도통신위성 추적 안테나 4기
 - (자료수집) 수위, 우량 등 수문자료 실시간 수집, 수집 단말기 제어 등
 - (영상수집) 주요 하천·저수지·댐 등 영상 실시간 수집, 관리·제어 등

25) 참고자료1. 전년도 잔여 예산으로 다음연도 사업 실시설계비를 사전에 집행한 사례(표) 참고

토²⁶⁾한 결과 개소당 2억 7,800만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바 있으며,

실제 공사계약은 총 609억 9,000만원에 체결하여 최종 개소당 공사비 단가는 2억 3,400만원(편성단가 대비 △5,6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동 사업에서 113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경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 시에도 2024년 편성 예산안과 동일한 개소당 공사비 단가(2억 9,000만원)로 추경안을 편성하여

2025 회계연도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경안으로 편성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⁷⁾.

[2024~2025 AI 수문관측소 구축사업 예산 및 개소당 공사비 단가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안 편성·심사		2024 예산 집행	2025 추경안(2차)
사업 예산	국회제출 예산안 총 774억원/ 258개소 1개소당 3억원	국회 심의·의결(수정안) 총 748억원(△26억원)/ 258개소 1개소당 2.9억원		국회제출 추경 예산안 총 150억원/ 50개소 1개소당 3억원
총 공사비	749억 5,400만원	723억 5,400만원	609억 9,000만원	143억 9,300백만원
개소당 공사비	2억 9,000만원	2억 7,800만원	2억 3,400만원	2억 9,000만원

26) 수위관측소의 설치 지점에 따른 토목공사 형식과 센서 형식에 따른 설계 단가를 개소별로 차등 적용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재검토('23. 10)

27)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4회계연도의 경우 대량 설치에 따라 평균 단가가 타 년도에 비해 절감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편성 단가(41개소 설치)는 3.2억원으로, 고성능의 관측방식이 필요한 현장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관측방식 채택을 고려해 개소당 단가를 2.9억원으로 정하였다고 밝힘.

셋째, 환경부는 연내 50개소의 AI 수문관측소 설치를 목표로 이번 추경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편성하였음.

AI 수문관측소 설치에 인·허가 등 관련기관 협의, 실시설계, 발주(건축, 통신), 계약, 공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건축 사업으로 1기 설치에 통상 10.7개월이 소요되며²⁸⁾,

홍수통제소별로 두개소 이상의 실시설계·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점용허가 등 인·허가 지연 문제, 수준점 측량 등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인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²⁹⁾.

동 사업의 경우 신규 설치 50개소 모두 하천점용허가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연중 설치 계획이 확정되어 통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통신장비, 수위계 등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을 수계별로 동시 발주하는 등 설치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별 사업관리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안으로 편성된 AI 수문관측소 설치 목표와 개소별 설치 단가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동 사업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28) 2022년 AI 수문관측소 설치사업으로 준공된 38건의 실시설계 기간 및 공사 기간의 합계 평균

29) 2022년 충의교, 강동교, 망담교, 문척교, 상평교, 용두교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신설 지점 위치 조정 문제로 실시설계 기간만 1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전년도 잔여 예산으로 다음연도 사업 실시설계비를 사전에 집행한 사례 (AI 수문관측소설치 사업)³⁰⁾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실시설계 기간	집행액
2024년 예산으로 2025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1건)	수자원통신위성 수문자료 수집 안테나 구축 (‘25년 신규사업)	‘24.12.10 ~’25.07.08	157
2023년 예산으로 2024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4건, 총 110개소)	우제교 등 수위관측소 설치	‘23.10.06 ~’24.07.19	75
	강원 권역 수위관측소 설치	‘23.10.26 ~’24.03.08	66
	상동교 등 수위관측소 설치	‘23.10.31.~’23.12.29.	93
	충촌1교 등 수위관측소 설치	‘23.12.27 ~’24.11.20	4
2022년 예산으로 2023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2건, 총 12개소)	월산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0.26.~’22.12.24.	21
	교촌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0.26.~’22.12.24.	
	모양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85
	신미장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연등5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삼천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임상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남천1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남외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남창5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대신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죽평교 수위관측소 설치	‘22.12.20.~’23.06.16.	
2021년 예산으로 2022년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사례(3건 총 10개소)	강동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48
	망담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문척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상평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용두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개끄리민교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27
	평화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개롱이교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제2동산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24.~’22.08.27.	
	충의교 수위관측소 설치	‘21.12.14.~’22.11.1.	48

30) 자료: 환경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실시설계 계약서 자료를 재구성

(3) 국가하천정비(5331-301)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국가하천정비’(1995~, 직접) 사업은 89개(4,069km)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 하천공사³¹⁾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가하천정비(일반), 배수영향구간 정비, 승격하천 정비,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굴포천 국가하천정비, 서낙동강 국가하천정비, 원주천 재해예방사업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6,794억원이 편성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2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18억원(5.9%)이 증액되어 7,437억원으로 조정되었음.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국가하천정비	662,717	679,400	701,900	743,700	41,800	5.9%
▪ 국가하천정비(일반)	556,470	450,100	472,600	485,100	12,500	2.6%
▪ 배수영향구간정비	36,780	68,800	68,800	78,300	9,500	13.8%
▪ 승격하천정비	10,295	53,500	53,500	56,500	3,000	5.6%
▪ 목감천 정비	30,300	60,000	60,000	76,800	16,800	28.0%

31)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나.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내역사업 중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국가하천 109개 지구의 제방축조·보축, 준설 등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고,

목감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목감천지구³²⁾의 제방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내역사업임³³⁾.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³⁴⁾에 대한 하천공사를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23. 8. 16)에 따라 20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며,

승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하천범람 위험이 큰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지정요건³⁵⁾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32) 경기 광명 광명동~서울 구로 개봉동 일원(12.3km), 사업기간: '24~'29(6년), 총사업비: 3,847억원

33) 환경부는 2024회계연도부터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 국가하천정비사업과 원주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4개 사업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 중임.

34)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총 411개소, 593km)에 대한 향후 10년 간 총사업비는 4조 6,000억원으로 추계

35)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국가하천정비(일반), 배수영향 구간정비, 승격하천정비,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등 4개 내역사업의 공사비 및 보상비 증액분 418억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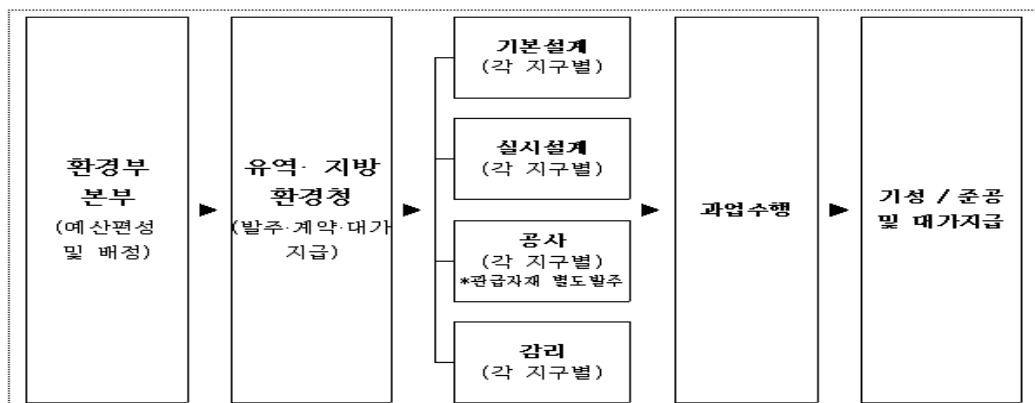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백만원)

비목	내역사업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건설보상비 (410-00)	국가하천정비(일반)	26,800 (7개소)	선변지구, 임실2지구, 적성2지구, 청미지구 (4개소, 328필지): 4,000
	배수영향구간정비		천안지구(1개소, 제방구간 4km): 3,000
	승격하천정비		금천지구(1개소, 제방구간 280m): 3,000
	목감천정비		공유지(712㎡) 유상전환 보상비: 16,800
공사비 (420-03)	국가하천정비(일반)	15,000 (9개소)	오계지구, 선변지구, 구례지구, 나주1지구, 죽고지구 (5개소, 제방축제, 보축 등 7.7km): 8,500
	배수영향구간정비		진위지구, 대반지구, 서정리지구, 용주지구 (4개소, 교량, 보축 등 1.1km): 6,500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환경부 본부의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외에는 6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재배정되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감리 사업 순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공사 전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등), 지장물·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각 단계별로 당초 연차별 물량을 조기 집행하는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본공사 착공·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³⁶⁾³⁷⁾.

이에 환경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 공사비와 보상비를 각각 150억원, 268억원 증액하여 금년 중 추가 집행 가능한 하천구간의 제방축조, 홍수방어벽 설치 등을 실시하고, 보상비 집행이 원활한 사업 지구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착공을 앞당기는 등 홍수방어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지구명	'25년			세부 내역
		본예산	1차 추경 (비목)	2차 추경 (비목)	
계		125,024	5,360	41,800	
국가하천정비 (일반)	오계지구	3,850	300 (공사비)	1,800 (공사비)	제방 보축(6개소) 2.0km 홍수방어벽 0.8km 보개량(1개소) 0.2km
	구례지구	5,060	-	1,000 (공사비)	제방 축제(1개소) 1.1km
	선변지구	3,313	-	700 (공사비)	자전거도로(1개소) 0.5km
				1,000 (보상비)	보상대상(114필지) 보상비
	임실2지구	4,050	2,000 (공사비)	1,000 (보상비)	보상대상(100필지) 보상비
	적성2지구	3,919	-	1,000 (보상비)	보상대상(90필지) 보상비
	나주1지구	2,769	-	3,000 (공사비)	제방 축제(2개소) 2.3km
	청미지구	4,394	-	1,000 (보상비)	사유지 24필지 보상비
	죽고지구	4,570	3,060	2,000 (공사비)	축제(1개소) 800m

36) 목감천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5월 말 현재, '25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건설보상비(410-00) 505억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여 보상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 공사비 예산 122억 5,100만원을 조기 집행,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7)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업추진 중단 지구 등 집행부진 지구 예산을 예산이 부족한 지구에 추가배정하는 자체 예산조정(변경내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연중 6차례 자체 예산조정을 실시한 바 있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지구명	'25년			세부 내역
		본예산	1차 추경 (비목)	2차 추경 (비목)	
			(공사비)		
배수영향구간 정비	진위2지구	3,264	-	1,000 (공사비)	보축(1개소) 200m
	대반·도대 천지구	3,356	-	1,000 (공사비)	축제 400m, 교량 1개소
	서정리천 지구	2,420	-	1,500 (공사비)	축제 500m
	천안지구	3,390		3,000 (보상비)	제방축제(4km) 구간 보상비
	용주지구	8,812	-	3,000 (공사비)	용주교(1개소) 재가설
승격하천정비	금천지구	11,857	-	3,000 (보상비)	제방축제(280m) 공사구간
목감천	목감천지구	60,000	-	16,800 (보상비)	공유지 712m ² 유상전환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³⁸⁾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소요(토지 매수, 추가 공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② 최근 극한호우의 연례화로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강우·태풍의 변동성이 매우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홍수방어 인프라를 앞당겨 구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하천의 개량·보수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38)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으로 보임.

다만, 편성된 공사비가 적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하천점용 및 도로점용 인·허가 등), 지장물·토지 보상 등 사전 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2024년 국가하천정비사업 공사비 집행 사례를 보면, 총 116개 지구 중 51개 지구에서 실시설계 지연, 인허가 협의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미이행으로 인해 편성 예산 대비 60% 이하로 감액 집행하였으며(참고자료1. 2024 회계연도 공사비 집행 부진 사업 내역),

이 중 28개 지구는 당초 편성된 예산 388억 8,500백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여 내역변경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포함하여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 공사비의 경우 연중 648억 4,300만원을 예산변경(이·전용, 내역변경 등)하였고,

[2024 회계연도 국가하천정비사업 내역사업별 공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별)	2024회계연도(12월 말 기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하천정비(일반) -공사비(420-03)	353,597	29,008	△64,843	317,761	300,874	15,513	1,374
배수영향구간 -공사비(420-03)	16,048	-	△3,944	12,104	10,664	1,392	48
승격하천정비 -공사비(420-03)	-	-	13,660	13,660	6,164	7,446	50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공사비(420-03)	5,500	-	-	5,500	1,409	4,091	1
서낙동강 국가하천정비 -공사비(420-03)	1,900	-	△1,900	-	-	-	-
원주천 국가하천정비 -공사비(420-03)	4,000	-	△3,800	200	190	10	-

세부사업 전체로 보면, '24년 말 기준으로 공사비는 당초 편성 예산대비 617억 4,400만원(3,810억 4,500만원 ▶ 3,193억 100만원, 16.2%) 감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국가하천정비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	집행액	세목	예산액	집행액
· 일반수용비	350	321	· 기본조사설계비	44,105	36,690
· 임차료	-	21	· 실시설계비	63,421	56,581
· 국외업무여비	22	21	· 공사비	381,045	319,301
· 사업추진비	10	10	· 감리비	46,139	40,042
· 배상금	-	25	· 시설부대비	2,552	1,634
· 건설보상비	125,073	185,135			

2025년에도 국가하천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집행현황('25. 5. 말 현재)을 보면 공사비 집행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5 회계연도 국가하천정비사업 내역사업별 공사비 집행 내역(5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2025년 예산('25년 5월 말 현재, 기준)							'25년 제2회 추경안
	예산액	제1회추 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국가하천정비(일반)								
-공사비(420-03)	264,104	284,104	15,513	62,065	361,682	92,191	25.5	292,604
배수영향구간								
-공사비(420-03)	34,420	34,420	1,392	△11,941	23,871	6,203	26.0	40,920
승격하천정비								
-공사비(420-03)	32,300	32,300	7,446	△14,354	25,392	6,412	25.3	32,300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공사비(420-03)	8,160	8,160	4,091	-	12,251	2,242	18.3	8,160
원주천 국가하천정비								
-공사비(420-03)	4,580	4,580	10	-	4,590	12	0.3	4,580

문발지구 등 56개 사업지구는 '25. 5월 말 현재까지 공사비를 전혀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 편성 이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⁹⁾.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대해서도 당초 편성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사비 예산의 연중 예산 변경(이·전용, 내역변경 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9)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하천정비공사 실시 지구 총 137개소 중 56개소는 실시(보완)설계, 인허가 협의, 토지보상, 조달청 공고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수행 중으로 현재('25. 5월 말)까지 편성된 공사비 예산(885억 6,4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2. 2. 2025 회계연도 공사비 미집행 사업 내역(5월 말 현재)(표)].

참고자료1

2024 회계연도 공사비 집행 부진 사업 내역⁴⁰⁾⁴¹⁾

(단위: 백만원)

사업명(지구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A/B)	사유
문발지구	4,1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차현지구	5,000	3,000	60.0%	지장물 이설 지연 및 토지보상 지연
화포1지구	5,200	2,804	53.9%	사토장 선정 미협의를
진주지구	3,4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감천홍수취약	4,300	780	18.1%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이전 지연
하리지구	3,4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정암지구	1,7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김천지구	4,300	969	22.5%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청덕지구	4,600	2,500	54.3%	사토장 선정 미협의를
금곡지구	800	10	1.3%	관계기관 협의 지연
거창지구	5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계산지구	5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풍산지구	1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대포지구	6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양산천홍수취약	6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중곡지구	6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영천지구	5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구곡지구	2,000	210	10.5%	토지보상 지연
인산지구	2,000	1,010	50.5%	토지보상 지연
미암지구	2,000	1,110	55.5%	토지보상 지연
대전1지구	3,900	1,146	29.4%	토지보상 지연
탕정지구	4,100	1,182	28.8%	토지보상 지연
영동지구	100	-	미집행	농지 및 산지 인허가 협의지연
대청지구	100	-	미집행	농지 및 산지 인허가 협의지연
배방지구	1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풍세지구	100	-	미집행	설계 지연으로 공사발주 시기 조정
소정지구	10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40) 자료: 환경부

41)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토지보상 등 사전 준비절차 지연으로 공사비 편성 예산(최초 내시) 대비 60% 이하로 감액 집행한 사례

사업명(지구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A/B)	사유
대강2지구	3,300	1,777	53.8%	관계기관 협의 지연
대강1지구	2,000	80	4.0%	관계기관 협의 지연
선변지구	3,200	80	2.5%	관계기관 협의 지연
적성1지구	900	80	8.9%	관계기관 협의 지연
적성2지구	900	80	8.9%	관계기관 협의 지연
구산1지구	1,835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구산2지구	1,466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송정1지구	1,000	157	15.7%	관계기관 협의 지연
송정2지구	1,000	200	20.0%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간전지구	1,120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부평지구	4,693	1,653	35.2%	용지보상 협의 지연
영월읍지구	8,344	4,498	53.9%	용지보상 협의 지연
개야1지구	1,564	-	미집행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개야2지구	1,565	-	미집행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반곡지구	3,129	-	미집행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제방안전성지구	5,590	-	미집행	제방안전평가 지연
대반천,도대천지구	2,368	1,255	53.0%	토지 분할 및 보상 지연
창릉지구	320	-	미집행	과업 중 상위계획재수립
탄현지구(배수)	320	-	미집행	토지보상 미협의를 따른 감액
홍릉지구(배수)	32	-	미집행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예천지구	1,840	890	48.4%	토지보상 지연
유등지구	845	-	미집행	용지보상 선 추진
천안지구	845	451	53.4%	본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실시 등
유보액(일반)	4,599	-	미집행	토지 분할 및 보상 지연

참고자료2

2025 회계연도 공사비 미집행 사업 내역(5월 말 현재)⁴²⁾

(단위: 백만원)

사업명(지구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A/B)	사유
문발지구	2,97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회동지구	3,910	—	—	이월예산 집행 중
산청지구	1,350	—	—	조달청 공고 중
진주지구	1,360	—	—	조달청 공고 중
하리지구	1,210	—	—	환경단체 민원으로 지연
정암지구	1,680	—	—	조달청 공고 중
금곡지구	450	—	—	이월예산 집행 중
거창지구	3,410	—	—	이월예산 집행 중
계산지구	2,644	—	—	이월예산 집행 중
동춘지구	640	—	—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울하지구	2,980	—	—	실시설계 중
풍산지구	1,180	—	—	실시설계 중
양산천홍수취약 시설물지구	460	—	—	실시설계 중
중곡지구	1,160	—	—	환경단체 민원으로 지연
영천지구	3,050	—	—	조달청 공고 중
평강천 지구	1,980	—	—	환경단체 민원으로 지연
기산지구	1,980	—	—	실시설계 중
상북지구	360	—	—	실시설계 중
반송지구	660	—	—	실시설계 중
유곡지구	2,510	—	—	조달청 공고 중
상전지구	240	—	—	실시설계 중
반천지구	1,280	—	—	실시설계 중
구곡지구	910	—	—	보상절차 진행 중
영동지구	2,19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탕정지구	1,250	—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추진 중
소정지구	16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풍세지구	1,41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배방지구	2,530	—	—	실시설계 중

42) 자료: 환경부

사업명(지구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A/B)	사유
금산1지구	2,190	—	—	실시설계 중
금산2지구	2,840	—	—	실시설계 중
반포1지구	170	—	—	실시설계 중
송정2지구	760	—	—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승인 지연
간전지구	2,940	—	—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구산1지구	1,060	—	—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구산2지구	620	—	—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영산강 대전지구	2,420	—	—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하화계지구	1,570	—	—	실시설계 중
굴운지구	1,47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태학지구	2,03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다수지구	2,110	—	—	보상절차 진행 중
평창강 후평지구	2,110	—	—	보상절차 진행 중
동진강화 호천지구	2,130	—	—	실시설계 중
우정지구	550	—	—	실시설계 중
창릉지구	739	—	—	실시설계 중
홍릉월문지구	1,420	—	—	실시설계 중
여주치수안전 강화지구	20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광주치수안전 강화지구	20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아산치수안전 강화지구	20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도곡치수안전 강화지구	200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대포지구	1,532	—	—	실시설계 진행 중
유등지구	834	—	—	보상절차 진행 중
평림지구	1,806	—	—	관계기관 협의지연
청평지구	5,028	—	—	편입토지 수용재결 중
매전지구	2,041	—	—	보완 설계 진행 중
운문지구	2,521	—	—	보완 설계 진행 중
별암지구	959	—	—	보완 설계 진행 중

3. 환경개선특별회계

(1) 비점오염저감사업(1131-30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비점오염저감사업’(2008~, 지자체 보조)은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지역 등 비점오염원⁴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28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7억 8,600만원 대비 180억 1,200만원(62.6%) 증액된 467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비점오염저감사업	33,866	28,786	28,786	46,798	18,012	62.6
▪ 고농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시범사업	-	1,358	1,358	1,358	-	-
▪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원 집중 관리사업	575	575	575	575	-	-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가보조	33,291	26,853	26,853	44,865	18,012	67.1

43)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점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나. 실집행 부진 사업 대상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내역사업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가보조’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계속사업 36개소(260억 8,900만원), 신규사업 4개소(7억 6,400만원)에 대한 공사비로 총 26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사업 부지 확보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해옴에 따라, 2025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32억 9,100만원 대비 64억 3,800만원(19.3%) 감액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축되어왔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가보조 내역사업 최근 5개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1	60,447	0	60,447	59,568 [55,667]	98.5	92.1	879	0
’22	48,725	879	49,604	49,061 [43,730]	100.7	89.7	0	543
’23	34,911	0	34,911	34,404 [36,339]	98.5	104.1	400	107
’24	33,291	400	33,691	30,696 [38,573]	92.2	115.9	2,995	-
’25 (5월말)	26,853	2,995	31,065	16,693 [10,198]	62.2	38.0	-	-

자료 : 환경부

이와 같이 최근 실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⁴⁴⁾ 감축되어왔으나, 환경부는 도시지역의 불투수면 확대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의 증가⁴⁵⁾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의 약 70%가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조기완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개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180억 1,200만원을 증액(2025년 본예산 대비 67.1%)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25년 예산		'25년 제2회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853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6,853백만원 가. 계속사업 26,089백만원 • 36개소 x 725백만원 나. 신규사업 764백만원 • 4개소 x 191백만원	44,865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4,865백만원 가. 계속사업 44,101백만원 • 37개소 x 1,192백만원 나. 신규사업 764백만원 • 4개소 x 191백만원

44) 예산 ('21) 60,447 → ('22) 48,725 → ('23) 34,911 → ('24) 33,271 → ('25) 26,853백만원

45) '19년 15개소→'24년 27개소

[제2회 추경안 대상 세사업명]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	추경안
11개소		5,999	18,012	24,011
부산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238	2,145	2,383
부산시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1,000	734	1,734
양산시	북정빛물펌프장 그린빛물인프라 조성사업	803	1,950	2,753
진주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500	900	1,400
금산군	기사천 축산습지 조성사업	1,906	1,106	3,012
광주시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736	2,684	3,420
무안군	무안 창포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	817	817
춘천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265	1,080	1,345
음성군	음성군 비점오염저감사업	159	3,308	3,467
단양군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77	1,456	1,533
진안군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315	1,832	2,147

자료 : 환경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⁴⁶⁾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⁴⁷⁾

46)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47)

최근 건설투자 조정⁴⁸⁾이 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의 추경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경기 진작과 함께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임.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2025년 준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완공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추경으로 편성된 전체 세사업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률은 2025년 예산현액 대비 33.6%에 불과하므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5월 기준 11개 사업 전체 국고 기준 실집행 현황]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48)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임(2025.6.1.).

(단위: 백만원, %)

'25년 예산	'25년 교부액 (이월포함)	사업시행주체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5,999	6,884	2,278	9,162	3,076	33.6

자료 : 환경부

[2025년 5월 기준 세사업별 지자체 기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	사업명	사업기간	'25년 예산	'25년 교부액 (이월포함)	사업시행주체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부산	부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22~'25	238	238	306	544	306	56.3
경남	진주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22~'26	500	200	-	200	-	0
충남	금산	기사천 축산습지	'21~'26	1,906	1,906	-	1,906	1,189	62.4
충북	음성	음성군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16~'26	159	60	33	93	-	0
전북	진안	구량천 인공습지조성사업	'20~'26	315	315	35	350	350	100
부산	부산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1~'26	1,000	1,000	476	1,476	150	10.2
경남	양산	북장빛물펌프장 그린빛물인프라	'20~'26	803	803	471	1,274	567	44.5
광주	광주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20~'26	736	1,338	440	1,778	461	25.9
전남	무안	무안 창포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22~'26	-	-	483	483	36	7.5
강원	춘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21~'26	265	978	-	978	17	1.7
충북	단양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22~'26	77	46	34	80	-	0
계				5,999	6,884	2,278	9,162	3,076	-

자료 : 환경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11개 중 3개 지역(진주, 음성, 단양)은 지방자치단체 기준 실집행률이 0%이고, 일부 지역⁴⁹⁾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추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환경부는 2025년과 2026년 준공 예정 사업에 대하여 연부율을 적용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도 (시군)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 기준, A)	~'24년 집행액 (B)	잔여 국비 (A-B)	연부율	추경			
							'25년 예산 (C)	추경 (안) (D)	계 (E= C+D))	잔여 (R= A-B-E)
합계			69,571	18,335	51,236		5,999	18,012	24,011	27,225
부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부산	22~25	3,000	617	2,383	100	238	2,145	2,383	0
진주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진주	22~26	3,700	2,300	1,400	100	500	900	1,400	0
금산 기사천 축산습지	금산	21~26	4,656	1,644	3,012	100	1,906	1,106	3,012	0
음성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음성	16~26	6,913	3,446	3,467	100	159	3,308	3,467	0
구량천 인공습지조성사업	진안	20~26	3,993	2,416	1,577	100	315	1,262	1,577	0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산	21~26	14,900	1,226	13,674	40	1,000	1,304	2,304	11,370
북정빛물펌프장 그린빛물인프라	양산	20~26	7,844	961	6,883	40	803	1,950	2,753	4,130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광주	20~26	10,603	2,053	8,550	40	736	2,684	3,420	5,130
무안 창포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무안	22~26	3,143	1,100	2,043	40	0	817	817	1,226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춘천	21~26	5,820	1,404	4,416	40	265	1,080	1,345	3,071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단양	22~26	5,000	1,168	3,832	40	77	1,456	1,533	2,299

자료 : 환경부

49) 부산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무안 창포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단양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업 중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 시설물의 마감이 지연될 경우 주민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⁵⁰⁾,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지될 우려⁵¹⁾가 있는 경우, 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2024년 예산 미교부에 따라 공사기간 순연이 발생한 경우⁵²⁾인 사업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안전 우려나 사업 순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둘째, 지속적인 실집행 부진에 따라 최근 5년간 동 사업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축 기조였던 사업예산이 다시 증액되게 됨.

2025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32억 9,100만원 대비 64억 3,800만원(19.3%) 감액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감액된 예산보다 오히려 더 큰 액수인 180억 1,200만원을 증액(2025년 본예산 대비 67.1%)하고 있음.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주민 반대와 부지 확보 실패, 행정 절차 등에 따른 실집행 부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물리적, 행정적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된 예산을 다시 증액할 경우 원활한

50) 양산 북정 빗물펌프장 조성사업

51) 광주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52) 춘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폐수처리시설(1131-305)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공공폐수처리시설’(1988년~, 직접·지자체보조) 사업은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농공단지와 같은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1,03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1억 6,600만원 대비 57억 8,500만원(5.6%) 증액된 1,08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공공폐수처리시설	95,645	103,166	103,166	108,951	5,785	5.6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2,637	68,377	68,377	74,162	5,785	8.4
▪ 국가시설 개선	22,900	34,681	34,681	34,681	-	-
▪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100	100	100	100	-	-
▪ 국내여비	8	8	8	8	-	-

나. 조기 준공 추진을 위한 사업 수요 근거 확보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공공폐수처리시설⁵³⁾ 설치’ 사업은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계속사업 50개소(663억 8,500만원), 신규사업 7개소(19억 9,200만원)에 대한 지원비로 68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조기 준공 및 적기 시설 운영을 위해 50개 계속사업 중 2개(신설 1개소, 증설 1개소)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57억 8,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2025년 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8,377	○ 자치단체 보조(320-03) : 68,377백만원 가. 신규사업: 7개소 1,992백만원 나. 계속사업: 50개소 66,385백만원	74,162	○ 자치단체 보조(320-03) : 74,162백만원 가. 신규사업: 7개소 1,992백만원 나. 계속사업: 50개소 72,170백만원

53)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별방지시설보다 높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보다 효과적임.

※ 개별방지시설 설치시 배출허용기준(BOD 120mg/L, 최대 '나'지역) 적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시 강화된방류수 수질기준(BOD 10mg/L) 적용

[제2회 추경안 대상 세사업명]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	추경안
2개소		7,988	5,785	13,773
경기 용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단계) 설치 (‘27준공)	4,554	4,927	9,481
충북 음성	음성 대풍산단(2단계) 증설 (추경 반영시 ‘25준공)	3,434	858	4,292

자료 : 환경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⁵⁴⁾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⁵⁵⁾

5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55)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최근 건설투자 조정⁵⁶⁾이 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의 추경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시설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생산 활동을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추경예산안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와 폐수 발생량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증설 또는 신설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을 조기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입주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투자 효과가 제한된 경우도 있었던 사례⁵⁷⁾처럼, 수요를 과대 예측할 경우 과잉투자 우려가 있고, 반대로 수요를 과소 예측할 경우 설비 부족으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의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음성 대풍산단(2단계) 증설의 경우, 산단 내 입주업체가 2025년 12월 내 완료 계획으로 현재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있는

56)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임(2025.6.1.).

57)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충분한 기업 입주 및 증설 예측량 대비 유입 부족으로 최소 유량폐수유입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상황이므로 조기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업의 설비 확장 계획이 변경될 경우 조기 증설의 효과가 감소되므로 수요 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입주업체 폐수발생 및 계획량(유입승인)]

구 분		계획 오·폐수량(㎥/일)		
		기준배출량	증설계획량	계
합 계		2,497	1,362	3,859
일최대 오·폐수량	소 계	2,382	1,297	3,679
	(주)오뚜기	1,163	1,000	2,163
	(학)건국유업·건국햄	994	80	1,074
	(주)한독	196	100	296
	태남메디코스(주)	8	51	59
	조광페인트(주)	20	66	86
	오뚜기물류서비스	1	-	1
지하수량		115	65	180

자료 : 환경부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산단 내 기업 입주가 2027년 1월부터로 예상되어, 해당 시기에 맞추어 시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로,

2025년 3월 기준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입주 예정 업체의 분양계약율이 81%에 이르는 등 명확한 수요 근거가 있으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방비 매칭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관리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설치 이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이후 지방비 확보가 미비하거나 운영인력·기술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설 성능 저하 또는 환경 민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추경 편성과 함께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운영관리 계획, 유지보수 체계의 현실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셋째,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재 수급, 인력 확보, 공정 통제,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공기 단축에 따른 설계·조달·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 환경부 및 지자체의 사업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시설 운영의 품질 확보와 안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 이후 운영·유지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여력과 관리 역량을 검토하며, 조기 준공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감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 2개소 사업 현황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설치사업(계속)

1 시설 개요

- (시설용량) 13,000m³/일(전체 시설용량 20,000m³/일 중 1단계)
- (사업기간) '21.03~'27.12
- (사업비) 총사업비 91,178백만원

시설용량 (m ³ /일)	총 사업비(백만원)					처리공법	사업시행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원인자 추가사업비		
13,000	91,178 (100%)	26,893 (50%)	- (-)	26,893 (50%)	37,392 (-)	고도처리공법	용인시

*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및 주거·학교 등 기타용지 오수발생 사업비는 국고지원 매칭 사업비에서 제외

2 오·폐수 발생(예정)량

구 분	계	산업시설 용지		주거·학교 등 기타 용지	비 고
		오수	폐수	오수	
오·폐수발생량(톤/일)	19,113	373	15,976	2,764	지하수량 제외
오·폐수발생 부하량(kg/일)	1,123.9	37.3	318.6	768.0	BOD 기준

3 추진 경과

- 2021.03.29.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3.06.30.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 2023.09.26.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4.09.27.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24.11.04. :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검토(재원협의) 완료
- 2025.02 : 공사 착공 (※ 공사준공 '27년 12월 예정)

4 추경 필요성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기업 입주에 '27년 1월부터 예상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26년까지 완료하고 '27.1월부터 시운전('27.1~'27.6)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단축('27.12 → '27.6) 필요

※ SK하이닉스 공장가동('27.上), 협력업체 입주 및 공장가동('27.1월~)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총 국고	2024	2025	2026	2027
당 초	'24~'27	26,893	300	4,554	8,816	13,223
추경 後	'24~'27	26,893	300	9,481	6,845	10,267

- 금년 2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4%로 금년말까지 공정률 20%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4,927백만원 지출 가능

〈참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

- 단지지정일 : 2021년 3월 29일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 단지조성계획(180개 업체* 입주 예정, '25.3월 분양계약율 81.0%)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조성규모 (km²)				착공일	준공일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 타		
4,156	3,036(SK하이닉스_1,975(65.1%))	32	1,088	2022.04	2027.02

2 음성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 증설사업(계속)

1 시설 개요

- (시설용량) 1,400m³/일(전체 시설용량은3,900m³/일 중 2단계)
- (사업기간) '21.07~'26.04
- (사업비) 총사업비 15,152백만원

시설용량 (m ³ /일)	사업비(백만원)				처리공법	사업시행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1,400 (2단계)	15,152 (100%)	10,607 (70%)	- (-)	4,545 (30%)	생물학적 고도처리	음성군

2 오·폐수 발생(예정)량

구 분	계	생산시설 용지			주거·학교 등 기타 용지	
		폐수	오수	지하수	오수	지하수
오·폐수 발생량(톤/일)	3,859	3,529	150	180	-	-
오·폐수 발생 부하량(kg/일)	1,867.6	1,817.3	50.3	-	-	-

3 추진 경과

- 2019.11.01. :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 2단계 시설(Q=1,400m³/일) 증설
- 2023.0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11.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6.04. : 종합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 예정

4 추경 필요성

- 대풍산업단지는 기존 1단계(2,500m³/일)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입주업체의 추가생산 지연 중으로, 금회 2단계 증설(1,400m³/일) 시설을 조기 준공('26.4 → '25.12)시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적극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총 국고	2024	2025	2026
당 초	'21~'26	10,853	6,560	3,434	859
추경 後	'21~'25	10,853	6,560	4,292	0

- '23.11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54%로 금년말 공정률 100% 예상되며, 금회 '26년 계획된 예산 859백만원을 '25년으로 당겨 지원하면 금년 준공 가능

〈참고〉 산업단지 조성 현황

- 단지지정일 : 1992년 5월 8일
- 위치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8-2
- 단지조성(6개 업체 입주 완료_식료품 제조업 등)

조성규모 (㎡)				착공일	준공일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 타		
439,449.5	327,592.8	5,156.2	106,700.5	1991	1996

- 입주업체 폐수발생 및 계획량

구 분		계획 오·폐수량(㎡/일)		
		기존배출량	증설계획량	계
합 계		2,497	1,362	3,859
일최대 오·폐수량	소 계	2,382	1,297	3,679
	(주)오뚜기	1,163	1,000	2,163
	(학)건국유업·건국햄	994	80	1,074
	(주)한독	196	100	296
	태남메디코스(주)	8	51	59
	조광페인트(주)	20	66	86
	오뚜기물류서비스	1	-	1
지하수량		115	65	180

(3) 하수처리장 설치(1132-30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하수처리장 설치’(1992년~, 지자체보조) 사업은 4대강 등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설치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8,527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27억 4,100만원 대비 575억 6,600만원(6.8%) 증액된 9,10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하수처리장 설치	1,024,060	852,741	852,741	910,307	57,566	6.8
▪ 하수처리장 확충	391,041	307,430	307,430	333,888	26,458	8.6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63,019	545,311	545,311	576,419	31,108	5.7

나. 하수처리장 추경 요건 적정성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사업 집행 필요

내역사업인 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유입하수 고농도화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의 개량 및 하수찌꺼기 감량·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중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조비는 계속사업 161개소(2,920억 6,400만원), 신규사업 19개소(85억 4,700만원)에 대한 지원비로 3,006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내역사업 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농어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 단계에서 정화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계속사업 404개소(5,345억 8,100만원), 신규사업 41개소(107억 3,000만원)에 대한 지원비로 5,45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① 하수처리장 확충 계속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계속사업 16개소 대상으로 264억 5,800만원, 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계속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계속사업 25개소 대상으로 311억 800만원, 총 575억 6,6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25년 예산(A)	'25년 추경안(B)	B-A
산출내역	산출내역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845,922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903,488백만원	57,566
가. 하수처리장 확충 (300,611백만원) - 계속사업 161개소 (292,064백만원) - 신규사업 19개소 (8,547백만원)	가. 하수처리장 확충 (327,069백만원) - 계속사업 161개소 (318,522백만원) - 신규사업 19개소 (8,547백만원)	26,458
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45,311백만원) - 계속사업 404개소 (534,581백만원) - 신규사업 41개소 (10,730백만원)	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76,419백만원) - 계속사업 404개소 (565,689백만원) - 신규사업 41개소 (10,730백만원)	31,108

[제2회 추경안 대상 세사업명]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	추경안
41개소			58,779	57,566	116,345
하수처리장 확충 (16개소)			21,688	26,458	48,146
1	가평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81	1,265	1,946
2	성남	관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	36	563	599
3	여주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60	1,410	2,170
4	용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5,823	7,066	12,889
5	이천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18	424	942
6	파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933	1,363	4,296
7	포천	일이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단계)사업	534	2,785	3,319
8	아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1단계)사업	410	1,229	1,639
9	광양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	263	310
10	양구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478	3,504	3,982
11	양양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68	382	2,450
12	철원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23	1,607	2,730
13	철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54	1,935	3,589
14	성주	원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140	1,750	3,890

연번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	추경안
15	고창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50	700	1,250
16	익산	익산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1,933	212	2,145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5개소)			37,091	31,108	68,199
1	연천	내산 소규모처리시설 설치	1,317	1,322	2,639
2	강화	불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52	1,654	2,206
3	김해	한림 삼미 마을 하수도 설치(증설)사업	2,235	462	2,697
4	밀양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673	1,903	5,576
5	밀양	고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121	818	2,939
6	밀양	미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345	279	1,624
7	밀양	임고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59	2,101	4,460
8	함안	어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51	984	2,635
9	부여	봉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731	1,215	2,946
10	예산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25	1,084	2,409
11	예산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73	877	1,950
12	강진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46	296	1,242
13	곡성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51	859	1,910
14	보성	조성 대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52	2,578	5,730
15	영암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20	2,160	2,880
16	영월	백골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297	803	1,100
17	정선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89	2,960	4,049
18	평창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817	2,452	3,269
19	화천	원천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2,278	1,150	3,428
20	횡성	갑천 매일, 포동2, 읍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99	104	1,603
21	횡성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82	1,191	2,473
22	성주	마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306	1,076	2,382
23	성주	용봉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	1,540	576	2,116
24	고창	왕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77	1,243	2,220
25	남원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755	961	1,716

자료 : 환경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⁵⁸⁾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⁵⁹⁾

최근 건설투자 조정⁶⁰⁾이 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 C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의 추경안은 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해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동시에 건설경기를 보완하고,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개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58)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59)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60)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임(2025.6.1.).

특히, 하수처리장 설치·개량 사업은 대규모 토목 및 기계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경기 진작 효과와 함께, 2025년 예산에 정상연부액 1,163억 4,500만원 중 51% 수준(587억 9,900만원)만 반영⁶¹⁾된 점을 고려하여 적기 준공을 위한 부족액을 증액하려는 것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대상으로 선정된 41개소 사업은 이미 예상된 연부 소요에 따른 예산 보강의 성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 중 하나인 ‘예측 불가능성’에 부합하지는 않아 보임.

환경부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⁶²⁾은 2026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당초 연부율 40% 수준의 공사비가 반영되었어야 하지만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 가량의 연부율만이 반영되었고, 이에 공사 중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상당수는 이미 연부 소요가 예측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추경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본예산 단계에서의 소요 산정 및 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연부소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61) 2025년도 예산 편성시 '25년 준공사업(137개소)은 100%(4,330억원)를 반영하고, '26년 이후 준공사업(428개소)은 나머지 사업비(4,005억원)로 편성

* 연부율 기준 : '25년 100%, '26년 40%, '27년 20%

62) 2026년 준공 예정인 101개 사업 중 전년도 실집행률 80% 이상인 41개소 선정

사전 검토와 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의 원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선정된 41개소 사업의 2025년 5월 기준 집행률을 보면, 교부액 기준 실집행률은 60.6%, 본예산 기준 실집행률은 46.2%로 비교적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2025년도 예산 자체가 미교부된 상황으로, 향후 추경예산 교부 후의 실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환경부 차원의 사업 관리가 필요함.

[' 25.5 기준 본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 사업비 (국고기준)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속사업 41개>		합계		382,510	58,779	59,625	44,833	27,170	60.6
가평	천안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20	'26	8,107	681	681	0	0	-
성남	판교수질복원 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	'23	'26	2,129	36	36	36	36	100.0
여주	오학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3	'26	7,858	760	760	0	0	-
연천	내산 소규모처리시 설 설치	'21	'26	8,008	1,317	1,317	1,317	121	9.2
용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21	'26	41,331	5,823	5,823	5,823	4,774	82.0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 사업비 (국고기준)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천	부발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12	'26	6,184	518	518	518	518	100.0
파주	광탄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17	'26	18,452	2,933	2,933	2,933	751	25.6
포천	일이동공공하 수처리시설 증설(2단계)사 업	'23	'26	9,926	534	534	0	0	-
강화	볼음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	'20	'26	7,262	552	552	0	0	-
김해	한림 삼미 마을 하수도 설치(증설)사업	'20	'26	8,515	2,235	2,235	1,700	785	46.2
밀양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1	'26	17,752	3,673	3,673	2,603	1,507	57.9
밀양	고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	'26	7,747	2,121	2,121	1,500	660	44.0
밀양	미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	'26	4,459	1,345	1,345	1,040	310	29.8
밀양	임고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2	'26	14,079	2,359	2,359	1,759	954	54.2
함안	어연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1	'26	7,823	1,651	1,801	1,166	610	52.3
부여	봉정 농어촌마을하 수도 설치사업	'21	'26	7,464	1,731	1,731	731	731	100.0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 사업비 (국고기준)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아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1단계)사 업	'20	'26	5,558	410	410	0	0	-
예산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	'17	'26	10,023	1,325	1,325	1,325	1,325	100.0
예산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	'19	'26	7,655	1,073	1,073	0	0	-
강진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	'26	8,776	946	946	500	257	51.4
곡성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3	'26	5,174	1,051	1,055	755	582	77.1
광양	광양 공공하수처리 장 증설사업	'21	'26	2,123	47	73	73	57	78.4
보성	조성 대전지구 농어촌마을하 수도정비	'21	'26	18,513	3,152	3,152	2,298	1,655	72.0
영암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	'22	'26	8,187	720	720	220	220	100.0
양구	오미 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사업	'21	'26	11,386	478	478	400	270	67.5
양양	하조대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21	'26	10,066	2,068	2,157	1,973	89	4.5
영월	백골하수처리 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22	'26	3,243	297	297	297	0	0.0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 사업비 (국고기준)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정선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1	'26	11,259	1,089	1,089	700	457	65.3
철원	김화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22	'26	7,881	1,123	1,123	932	932	100.0
철원	동송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22	'26	10,553	1,654	1,654	1,654	1,411	85.3
평창	도돈 농어촌마을하 수도 신설사업	'22	'26	9,760	817	817	0	0	-
화천	원천2리 소규모하수처 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20	'26	13,234	2,278	2,807	2,807	1,822	64.9
횡성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	'22	'26	5,148	1,499	1,499	1,499	427	28.5
횡성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	'23	'26	6,697	1,282	1,282	1,130	739	65.4
성주	마월 농어촌마을하 수도정비사업	'22	'26	7,360	1,306	1,306	1,306	1,306	100.0
성주	용봉 농어촌마을하 수도정비공사	'23	'26	6,103	1,540	1,540	1,540	1,540	100.0
성주	원정 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	'21	'26	15,280	2,140	2,140	1,800	1,015	56.4
고창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2	'26	6,605	977	977	300	300	100.0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 사업비 (국고기준)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고창	대산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22	'26	4,125	550	598	598	356	59.5
남원	남원 농어촌마을하 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3	'26	4,540	755	755	0	0	-
익산	익산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22	'26	6,165	1,933	1,933	1,600	653	40.8

①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시기를 순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② (사업비 미교부) 자금 확보 시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하고 있으며, 6월 확보된 자금을 교부(5월기준 4,167억원 → 6월기준 6,624억원)하여 공사 정상 추진 예정임
 자료 :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본예산 단계에서 소요 산정과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교부된 추경 예산의 실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4)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1132-309)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2021년~, 지자체보조)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 스마트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49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0억 1,100만원 대비 100억원(20.4%) 감액된 39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제2회 추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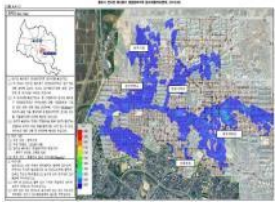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스마트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운영	22,852	49,011	49,011	39,011	△10,000	△20.4
▪ 스마트하수관로	10,096	44,168	44,168	34,168	△10,000	△22.6
▪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936	-	-	-	-	-
▪ 스마트통합하수관제 시스템 구축	11,820	4,843	4,843	4,843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①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441억 6,800만원)은 하

수관로에 실시간 수량·악취를 감시·제어하는 ICT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시침수와 하수악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② 하수도 자산관리 사업은 2024년 종료 사업, ③ 스마트 통합 하수관제시스템 구축 사업(48억 4,300만원)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및 하수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스마트 하수관로	도시침수 대응	강우 시 하수 월류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CT 측정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모니터링, 강우유출 시뮬레이션, 하수도 시설 연계 운영 등 도시침수 대응체계 구축 * ('21~'23) 5개소 설계, ('24~'25) 5개소 공사	
	하수악취 관리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해 ICT 측정 장비를 활용한 하수관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저감장치 자동 운영 등 하수악취 관리체계 구축 * ('21~'23) 5개소 설계, ('24~'25) 5개소 공사	
하수도 자산관리		하수도 시설(처리장, 관로 등)의 내용연수 연장,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설물 이력 관리, 자산 상태 데이터화, 데이터마이닝 등 자산관리체계 구축 * ('22~'23) 5개소 ('23~'24) 5개소	
스마트 통합 하수관제 시스템 구축		도시침수의 신속 대응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빅데이터 기반 하수도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환경부

나.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및 적기 완료 노력 필요

내역사업인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① 도시침수 대응 구축, ② 하수악취관리 사업으로 구분되어 각각 5개소씩 총 10개소에 ICT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0억 9,600만원 대비 337% 증가한 44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된 계속사업 1개소의 연차별 소요 예산 적정 조정을 위하여 100억원이 감액되었음.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종류	지자체	추진 상황(' 25.5 기준)	총사업비 (국고기준)	당초 (' 25년 예산)	추경안
도시침수 대응	광주광역시	설계 완료, 착공 준비 중 ※ '25.9월 착공 예정	7,468	17,120	7,120
	인천광역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	38,202	2,167	2,167
	대구광역시	공사 중	7,716	1,772	1,772
	광양시	설계 완료, 착공 준비 중 ※ '25.9월 착공 예정	5,800	3,906	3,906
	포항시	공사 중	9,208	1,882	1,882
하수악취 관리	대구광역시	공사 중	3,573	845	845
	광주 동구	설계 완료, 착공 준비 중 ※ '25.7월 착공 예정	10,595	7,596	7,596
	광주 남구	설계 완료, 착공 준비 중 ※ '25.8월 착공 예정	9,997	6,544	6,544
	군포시	재원 협의 중	4,394	2,336	2,336
	포항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	35,090	-	-

자료: 환경부

이번 추경안에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사업 중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25.3월)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불용 예상액 100억원을 감액한 것임.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당초	변경
총사업비 (국고 기준)	26,514백만원	7,468백만원
내용	전체 배수구역 16개소 대상	일부 배수구역 5개소 대상 (중점관리지역 및 침수이력 고려)
사업기간	’21년~’25년	’21년~’28년

자료: 환경부

동 내역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중 도시침수 대응 목적으로 5개소, 하수악취 관리 목적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2021년 중 해당 하수관로에 ICT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설계를 마친 후,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⁶³⁾, 지방비 확보, 설계용역 발주 이전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사업부지 선정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63)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됨 (「국가재정법」 제38조).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사업대상 10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집행 부진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 행정절차 적기 이행 노력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140억원이 감액된 바 있음.

그럼에도 2023년 416억 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집행률은 0.3%⁶⁴⁾에 그쳤고, 이월된 414억원을 포함한 2024년 예산현액 515억 3,100만원 중 실집행액은 9억 8,000만원(1.9%)으로, 나머지 325억 2,100만원을 불용하고 55억원을 이월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8,178	20,000	41,670	10,096	44,168
예산현액	8,178	6,000	44,120	51,531	-
집행액 (실집행액)	8,178 (0)	3,550 (7,178)	2,085 (120)	13,463 (980)	-
이월액 (사업시행주체 이월액)	0 (8,178)	2,450 (4,550)	41,435 (3,638)	-	-

자료: 환경부

64) 실집행액 120백만원/본예산 41,670백만원

또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편성된 잔여 공사비 전액인 441억 6,800만원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⁶⁵⁾이 있었음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이번 추경을 통해 22%(1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5)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p.285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2024년 9월 기준 10개소 중 7개소의 설계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액 414억원 전액이 미집행된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안에 잔여 공사비 전액인 44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2038-305)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하수처리수 재이용’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은 수량이 일정하고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중수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44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2억 2,600만원 대비 70억원(15.8%) 감액된 37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2,911	44,226	44,226	37,226	△7,000	△15.8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2,911	44,226	44,226	37,226	△7,000	△15.8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관리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2025년 본예산은 계속사업 16개소⁶⁶⁾에 436억 2,600만원, 신규사업 3개소에 6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는 설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 조정을 위하여 계속사업 5개소를 대상으로 70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 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 25년 예산(A)	' 25년 추경안(B)	B-A
산출내역	산출내역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44,226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37,226백만원	7,000
가. 계속사업 43,626백만원 - '25년 종료사업 5개소 18,214백만원 - '26년 종료사업 7개소 18,936백만원 - '27년 종료사업 2개소 3,111백만원 - '28년 종료사업 2개소 3,365백만원	가. 계속사업 36,626백만원 - '25년 종료사업 5개소 18,214백만원 - '26년 종료사업 7개소 17,449백만원 - '27년 종료사업 2개소 394백만원 - '28년 종료사업 2개소 569백만원	7,000
나. 신규사업 : 3개소 600백만원	나. 신규사업 : 3개소 600백만원	-

66) '25년 종료사업 5개소(182억 1,400만원), '26년 종료사업 7개소(189억 3,600만원), '27년 종료사업 2개소(31억 1,100만원), '28년 종료사업 2개소(33억 6,500만원)

[제2회 추경안 대상 세사업명]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감	추경안
5개소		8,123	△7,000	1,123
연천	연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709	△1,539	170
무안	무안군 물 재이용시설 설치	1,647	△1,487	160
제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848	△1,384	464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1,402	△1,178	224
임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517	△1,412	105

자료 : 환경부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5개 계속사업들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5개 사업 전부 2025년 현재 설계 중이며, 이 중 4개 사업은 실집행율이 0%, 나머지 한 개 사업은 12.4%에 불과한 상황으로,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적음.

또한, 해당 사업들의 공사 기간을 살펴보면 1개 사업은 2026년, 2개 사업은 2027년, 나머지 2개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단기간 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추경 대상 5개 사업 집행률 및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5년 예산(A)	'25년 예산 교부액	25년예산 지자체 집행액(B)	실집행율 (C=B/A, %)	추진단계	사업기간
계	8,123	559	230	2.8	-	-
연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709	0	0	-	설계중	'20~'27
무안군 물 재이용시설 설치	1,647	0	0	-	설계중	'21~'26
제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848	230	230	12.4	설계중	'24~'28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1,402	224	0	-	설계중	'24~'27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 이용사업	1,517	105	0	-	설계중	'24~'28

자료 : 환경부

이외에도 동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부지 선정 및 토지 보상 관련 협의의 어려움, 공사 관련 민원 발생, 지자체의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나타났으며,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해당 사업의 실집행 부진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음.⁶⁷⁾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사업 취소, 지자체 행정 절차(실시설계, 재원협의 등) 지연, 공사 지연 등을 사유로 121억원을 불용

67) 2018·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2018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등

하였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예산 편성 당시 해당 사업의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되는바, 향후 유사 사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 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 체계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하수처리수 이용 실적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하수처리수 수요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재이용률은 15.4%에 불과한 상황임.

[2022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단위 : 개소, 천m³/년)

시설수 *	하수처리량	재이용량	재 이용률	장내용수	장외용수				
					소계	하천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¹⁾
714	7,378,907	1,136,754	15.4%	502,181 (44.2%)	634,573	471,668 (41.5%)	129,039 (11.4%)	10,641 (0.9%)	23,225 (2.0%)

자료: 환경부

주 : 1) 기타 : 조경용수, 친수용수, 세척·살수용수 등을 합한 수치임

* 하수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 하수처리장 대상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년)에서 설정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에 따르면 1단계(2022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2.6%로 준수⁶⁸⁾하나, 이는 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대비 최종 실적

현황이 58.1%로 저조함에 따라 그 목표를 하향 조정(19.78억톤/년 → 12.27억톤/년)한 것에 기인하고, 그 실적은 오히려 제1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 3단계(2020년)의 실적인 11.5억톤/년보다 낮은 11.37억톤/년임.

이러한 상황에서, 제2회 추경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70억원(15.8%)를 감액 편성하고 있어, 이후 하수처리수 재이용 달성도가 더욱 부진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하수처리수는 매년 70억톤 이상 발생하여 지속적·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이라는 점, 향후 발생 가능한 수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주로 활용 중인 하천수, 댐 용수, 해수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수도 개발하여 수자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도입된 온실가

68)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물 재이용률 달성 현황('22.12. 기준)]

(단위:백만㎥/년, %)

구 분		총 계획량(누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21~2022	2023~2025	2026~2030
합 계	목 표	1,684	1,974	2,592
	'22년 실적	1,395.4	-	-
	달성율	82.9	-	-
빗 물	목 표	29	62	115
	'22년 실적	15.1	-	-
	달성율	52.1	-	-
중수도	목 표	391	438	517
	'22년 실적	243.5	-	-
	달성율	62.3	-	-
하수 처리수	목 표	1,227	1,422	1,898
	'22년 실적	1,136.8	-	-
	달성율	92.6	-	-

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물 재이용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정량 사업 중 하나로,

환경부는 2025년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하여 3,121tCO₂eq/m³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 시설 규모가 감소하여 재이용수 생산량이 조정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25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 정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지 누적		
					전체 (B)	감축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	-	52,911	44,226	44,226	3,121	18,726	△8,685	△164
(1)하수처리수 재 이용사업	O	건물	정량	52,911	44,226	44,226	3,121	18,726	△8,685	△164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예산 편성을 노력하는 한편, 추정에서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433-306)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등) 설치사업을 국고로 지원하여 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2,25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54억 9,900만원 대비 609억 9,400만원(27.0%) 증액된 2,864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4년 본예산	'25년		'25년 제2회 추경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제1회 추경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0,023	225,499	225,499	286,493	60,994	27.0
▪ 폐기물처리시설	159,349	224,825	224,825	285,819	60,994	27.1
▪ 폐 자 원 에 너 지 활성화	674	624	624	624	0	0

나. 연내 착공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사업 91개소(계속사업 78개, 신규사업 13개) 중 시설 공사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고 공기 단축 효과가 기대되는 7개 사업을 선정하여 609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 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4,825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224,825천원 가. 매립시설 29,417,000천원 (계속 15, 신규 2) 나. 소각시설 140,477천원 (계속 39, 신규 5) 다. 매립지 정비 26,738,000천원 (계속 8, 신규 4) 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14,781,000천원 (계속 6) 마. 친환경에너지타운 10,862,000천원 (계속 9, 신규2) 바. 에너지융복합 2,550,000천원 (계속 1)	285,819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285,819천원 가. 매립시설 29,417,000천원 (계속 15, 신규 2) 나. 소각시설 195,771,000천원 (계속 39, 신규 5) 다. 매립지 정비 32,438,000천원 (계속 8, 신규 4) 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14,781,000천원 (계속 6) 마. 친환경에너지타운 10,862,000천원 (계속 9, 신규2) 바. 에너지융복합 2,550,000천원 (계속 1)

[제2회 추경안 대상 세사업명]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	추경안
7개소		59,360	60,994	120,354
남원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300	5,700	6,000
서산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3,380	2,766	6,146
김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5,707	3,095	18,802
울산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3,280	10,000	23,280
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2,133	9,433	21,566
목포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3,526	15,000	28,526
성남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34	15,000	16,034

자료 : 환경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⁶⁹⁾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⁷⁰⁾

69)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70)

최근 건설투자 조정⁷¹⁾이 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의 추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선정된 7개소 사업의 2025년 5월 기준 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 기준 실집행률은 47.6%(본예산 기준 실집행률은 44.2%)로 비교적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2025년도 5월 기준 실집행률이 0%(김해 소각), 3.3%(남원 매립정비), 18.1%(대구 소각)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추경예산 교부 후의 실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제2회 추경안 대상 사업 실집행 현황('25.5 기준)]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71)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임(2025.6.1.).

(단위 : 백만원)

사업	규모 (천㎡ 또는 톤/일)	기간	현재 상황	25년 집행 현황					추경 안
				본 예산	교부액	예산 현액 (A)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 B/A)	
계				59,360	54,063	55,207	26,277	47.6	60,994
남원 매립 정비	360	25- 27	설계 (‘24.12.~ ’25.10.)	300	300	300	10	3.3	5,700
서산 소각	200	18- 26	공사중 (‘22.11.~ ’26.6.)	3,380	3,380	3,380	3,380	100.0	2,766
김해 소각	300	20- 25	공사중 (‘23.01~ ’25.12.)	15,707	13,138	13,138	0	0.0	3,095
울산 소각	460	20- 26	공사중 (‘23.05~ ’26.10.)	13,280	13,280	14,312	7,090	49.5	10,000
대구 소각	360	20- 26	공사중 (‘23.05~ ’26.05.)	12,133	10,000	10,112	1,832	18.1	9,433
목포 소각	220	21-2 7	공사중 (‘25.02. ~’27.08.)	13,526	12,931	12,931	12,931	100.0	15,000
성남 소각	500	19-2 7	공사중 (‘24.08~ ’27.11.)	1,034	1,034	1,034	1,034	100.0	15,000

자료 :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실집행액이 0인 김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25년 6월 공사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실집행률이 3.3%인 남원 매립정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25년 10월 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금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나, 공사비 지출이 예정된 시점까지 설계 완료, 인허가, 계약 절차 등 선행 조건이 지체될 경우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각로 사전제작’은 소각 시설 공사에서 소각로 본체를 현장 외부에서 미리 제작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는 것보다 공사 기간 단축(약 4개월)에 유리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개 사업(울산, 대구, 목포, 성남)에 반영되어 400억원 이상이 편성되었음.

[소각로 제작 절차도]

구분	공사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반 절차												
		발주	설계				제작·설치					
사전 제작												
		발주	설계									
			제작·설치									

자료 : 환경부

[소각로 사전제작 필요 예산 목록]

(단위 : 백만원, %)

사업	현재 상황	25년 집행 현황				추경 요구	산정근거 및 추경 효과
		본 예산	예산 현액 (A)	실 집행액(B)	실 집행률 B/A)		
울산 소각	공사중 ('23.05 ~ '26.10.)	13,280	14,312	7,090	49.5	10,000	- 공기단축(4개월) * 소각로 사전제작 필요 예산
대구 소각	공사중 ('23.05 ~ '26.05.)	12,133	10,112	1,832	18.1	9,433	- 공기단축(5개월), '25년 준공 * 소각로 제작 및 전기 공사 발주 등 준공 소요 공사비 반영
목포 소각	공사중 ('25.02. ~ 27.08.)	13,526	12,931	12,931	100.0	15,000	- 공기단축(4개월) * 소각로 사전제작 필요 예산
성남 소각	공사중 ('24.08 ~ '27.11.)	1,034	1,034	1,034	100.0	15,000	- 공기단축(4개월) * 소각로 사전제작 필요 예산

자료 : 환경부

소각로 사전 제작이 일반적인 절차에 비해 전체 공기를 단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주 이후 계약 협상 및 행정 절차 등에서 기술검토·계약심사 등 예기치 않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일정 관리와 사전 대응이 필요함.

둘째, 김해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일부 사업은 2025년 준공 완료 사업으로 연부율상 잔여 공사비 전액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공사비가 불충분하게 편성되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한 것

으로 보임.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일정에 맞게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본예산 편성 시 연부소요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계획 기반의 예산 편성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음.

셋째, 일부 지역⁷²⁾의 경우 2025년 본예산을 상반기 내에 모두 집행하여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안을 통해 사전 제작비를 보장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소요 산정 및 공정 계획 수립 시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연부소요 기준 현실화 등 보다 면밀하게 사전 기획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추경예산 교부 후의 실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연부소요 기준과 실제 사업 일정 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2) 목포 소각시설, 성남 소각시설

(7)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1831-301)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98~, 직접, 보조, 법정민간대행)은 국립공원의 보호·보전,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지역사회협력 등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원사업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질공원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1,455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60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다 304억 4,000만원(20.9%)이 증액됨.

[2025년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안 (A)	제2회 추경안 (B)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13,702	145,591	145,591	176,031	30,440	20.9
▪ 탐방로 정비·복원	14,774	14,774	14,774	30,574	15,800	106.9
▪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	12,516	4,876	4,876	19,516	14,640	300.2

나. 탐방로 정비·복원 사업: 연도내 사업완료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탐방로정비·복원’ 사업은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에 대한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⁷³⁾.

이번 추경안은 신규편입 및 훼손가속도가 심한 탐방로 등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증액편성된 158억원의 구체적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탐방로정비·복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구 분	길이(km)	편성액	비 고
도심형 및 탐방객 집중 탐방로	13	76억 200만원	설악, 북한(정릉), 도심형(북한산)
신규편입 탐방로	4.56	21억 9,800만원	지리, 오대, 태백
둘레길	15	60억원	북한산 둘레길, 태안 해변길, 한려 바다100길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제3차 공원구역 조정('23.5) 이후 신규 편입된 탐방로 중 훼손강도가 높은 지역(지리, 오대, 태백)과 북한산 등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가속도가 심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로(설악, 북한(정릉), 도심형(북한산)),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방문이 많은 둘레길(북한산둘레길, 태안해변길, 한려 바다100길)을 정비할 예정임.

73) 참고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총 길이는 2230.73km임.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⁷⁴⁾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으로 정비에 한계가 있었던 신규 및 노후 탐방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직접적 재정집행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②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자연재해 발생⁷⁵⁾ 등이 있었고, ③ 국립공원 탐방객과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탐방로 정비의 시급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탐방객 인원	38,793,952	39,455,363	40,655,814
안전사고 발생현황	131	119	118

자료: 환경부

다만, '24년 예산에 편성·집행되었던 탐방로 정비·복원 사업 중 일부

74)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75) 환경부에 따르면 탐방객 수 증가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계단 및 데크 훼손, 노면 세굴 등 탐방로 훼손이 증가하였다고 함.

* 훼손 탐방로: '21년 234.42km → '23년 287.74km(22.7% 증가)

가 이월된 바 있고, '25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탐방로 정비 예산 중 일부 구간의 경우 저조한 집행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하절기 태풍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 '24년 탐방로 정비·복원사업 중 이월된 2건의 사업은 '25년 5월 현재도 미집행 상태이고⁷⁶⁾, 이번 추경안(158억원)과 유사한 규모인 '25년 탐방로 정비·복원사업 본예산(147억 7,400만원)의 5월말 기준 집행률은 11.1%임.

[2025년 훼손탐방로 정비사업 집행현황]

(25.5.31.기준, 단위: km, 백만원, %)

구 분		2025년		'25년 집행률	
공원	사업내역	정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계	135개 노선	53.48	14,774	1,643	11.1
지리경남	의신마을~세석평전 등 5개 노선	2.80	565.0	57	10.1
지리전북	만복대~운봉아래 등 4개 노선	4.10	1,435.0	46	3.2
지리전남	화엄사~무녕기 등 3개 노선	1.83	640.0	112	17.6
경주	포석정~전망대 등 12개 노선	2.47	864.0	60	7.0
계룡산	동학사 세신정~큰배제 등 6개 노선	1.70	595.0	328	55.2
한려해상	금산입구~정상 등 3개 노선	0.86	301.0	47	15.7
한려동부	학동고개~구조라마을 등 8개 노선	8.53	1,615.0	25	1.6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등 4개 노선	1.30	455.0	60	13.3
속리산	떡바위~쌍곡폭포 등 6개 노선	2.41	828.0	27	3.3
내장산	내장사~신선삼거리 등 7개 노선	2.64	917.0	38	4.2

76) 설악 백담계곡(은선도~청룡담) 탐방로 조성사업과 오대 북대미륵암~신성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환경부에 따르면 설악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사업은 공사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이월액인 설계용역비 및 일부 선금을 7월중 집행 예정이고, 오대 북대미륵암·신성암 탐방로 조성사업은 공사중으로 9월중 이월액인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임.

내장백암	약사암입구~가인마을	0.89	156.0	42	27.1
가야산	신계동~상왕봉	1.00	175.0	24	13.9
덕유산	구천동탐방지원센터~영각공원지킴터 등 6개 노선	2.04	571.0	25	4.4
오대산	상원사~두로령 등 3개 노선	1.48	518.0	25	4.9
주왕산	절구폭포~용연폭포 등 4개 노선	2.45	499.0	24	4.9
태안해안	백사장~꽃지	0.28	49.0	24	49.6
다도해	휴양림~헬기장 등 3개 노선	1.18	207.0	43	20.9
다도서부	관호마을~벼락바위 등 2개 노선	0.82	287.0	75	26.2
치악산	세림폭포~비로삼거리 등 5개 노선	2.35	429.0	43	10.1
월악산	상선암~도락산 등 5개 노선	1.39	483.0	24	5.0
북한산	육모정매표소~육모정고개 등 16개 노선	3.12	1,088.0	100	9.2
북한도봉	원도봉~포대능선 등 14개 노선	2.03	457.0	59	13.0
소백산	희방주차장~연화봉 등 2개 노선	0.66	116.0	48	41.6
소백북부	천동~천동삼거리	0.32	112.0	27	24.4
월출산	천황사지구~도갑사 등 2개 노선	0.75	131.0	75	57.5
변산반도	가마소~내소사 등 2개 노선	0.59	103.0	41	40.1
무등산	수락골~샛골	0.20	70.0	63	90.4
무등동부	교리제~선정암 등 6개 노선	3.04	1,064.0	48	4.5
태백산	반재갈림길~문수봉갈림길 등 2개 노선	0.25	44.0	24	55.2

※ 출처: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의 편성목적인 대국민 이용시설의 적기 정비 추진을 통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 완료하여야 할 것임.

다.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 사업: 사업종류별 · 단계별로 정밀한 사업관리 필요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 사업은 2023년 신규 지정된 팔공산 국립공원의 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임.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146억 4,000만원은 팔공산 국립공원의 각종 행정 및 민원 사무, 현장관리, 공원자원보전 및 탐방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96억 4,000만원)와 핵심지역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수비용(50억원)으로 구체적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관리 사업 추경안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사업수량	사업비(안)
공원 시설 구축	진입도로 · 주차장 정비	진입도로	1	450
		주차장	2	330
	관리소 신축	관리소	3	2,265
	야영장 조성 및 정비	야영장	2	881
	탐방기본시설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6	2,104
		탐방지원센터	3	307
	탐방편의시설 조성사업	자연학습장	2	810
		무장애 탐방인프라	1	356
		탐방로	4.3km	1,992
		저지대숲체험인프라	1	145
	합 계	9,640		
사유지매수			5,000	

자료: 환경부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4조, 제19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

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립공원이 신규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리하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조기에 보완하여 신규 국립공원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5년간 별도 집중투자를 시행하여 옴.

[신규지정 국립공원 집중투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면적	탐방객수	예 산 액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무등산 (’13~’17년)	75,721km ²	241만명	43,790	6,000	8,500	9,700	10,350	9,240
태백산 (’17~’21년)	70,036km ²	41만명	45,216	7,286	9,461	9,468	9,500	9,501
팔공산	126,058km ²	358만명						

자료: 팔공산 국립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24.12. KDI)

팔공산국립공원의 경우 부처의 5년 투자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⁷⁷⁾ 결과 ‘공원시설 구축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상 사업(총사업비 599억 9,800만원)으로 등록된 상태임.

77)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타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대상이 됨.

[팔공산국립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과]

- ('21. 5.) 국립공원 지정 건의(대구광역시·경상북도 → 환경부)
- ('21. 9. ~ '22. 10.)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지정 및 공원계획(안) 마련)
- ('22. 12. ~ '23. 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경북('22. 12. 29.), 대구('23. 2. 6.)
- ('23. 2. ~ 3.)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 ('23. 4. ~ 5.)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23. 5.)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승격 확정)
- ('23. 6.)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고시(지정일: '23. 12. 31.)
- ('23. 7. ~ 12..) 팔공산국립공원 근무여건 조성 및 지자체 인수·인계
- ('24. 1. 1.)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대구·경북, 2개소)
- ('24.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 (기획재정부 → KDI)
- ('23. 7. 27. ~ '24. 5. 21.) 팔공산국립공원 지속가능 상생발전 종합계획
- ('24. 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완료
- ('25. 6. 11) 총사업비 대상사업 신규 등록 (기획재정부, 총 599.98억원)

자료: 환경부

[팔공산국립공원 공원시설 구축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사업비>	59,998	4,401	-	20,790	20,395	14,412
1. 공사비	51,794	3,481	-	14,665	19,765	13,883
2. 보상비	2,242	531	-	1,711	-	-
3. 시설부대경비	5,962	389	-	4,414	630	529

자료: 환경부

한편,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팔공산국립공원은 '23년 신규

국립공원으로 고시되었으나, 관련 공원시설 구축 사업예산이 '2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 국립공원 시설설치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팔공산국립공원 운영의 기초 인프라인 진입도로, 야영장,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자연보전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공원 내 핵심지역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 적합성,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⁷⁸⁾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통해 본예산으로 구축할 수 없었던 관련 공원시설 확충과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가 가능하게 되어 탐방객 이용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 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② 공원시설의 경우 '25년 본예산의 국회 제출 당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⁷⁹⁾ 기간 중이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③ 신규 국립공원으로서 고시된 이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관리소와 야영장, 주차장 등 기본시설의 정비가 미흡하고 사유지 비율이 타 국립공원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므로, 공원시설 정비 및 사유지 매

78)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79) 2024년 5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의뢰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보고서가 제출됨.

수가 시급한 점 등⁸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팔공산국립공원 공원시설 구축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 절차 진행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에 다양한 종류의 다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목표 기간내 완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팔공산국립공원 공원시설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사업진행 과정별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며⁸¹⁾,

진입도로·주차장 정비, 관리소 신축,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종류의

80)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팔공산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52.1%로 전체 공원 평균인 23.5%보다 높음.

8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 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제57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가격 검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시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사업이 60개를 상회하는 개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팔공산국립공원 공원시설 구축 부분 전체 사업계획(안)]

구 분			전체 사업수량	사업진행 현황 및 계획안		
				정비 완료	진행중· 추경(안)	26년이후 계획(안)
공원 시설 구축	진입도로· 주차장 정비	진입도로	7	1	1	5
		주차장	13	3	2	8
	관리소 신축	관리소	4		3	1
	야영장 조성 및 정비	야영장	3		2	1
	탐방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13	1	6	6
		탐방지원센터	8	2	3	3
	탐방편의시설 조성사업	자연학습장	8	1	2	5
		무장애 탐방인프라	4	2	1	1
		탐방로	28.5km	1.9km	4.3km	22.3km
		저지대숲체험인프라	1		1	

자료: 환경부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우 개별사업별로 집행단계 또한 다양한데, 공고 및 계약체결과 설계·공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올해 내 집행완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팔공산국립공원 추경안 사업별 집행 계획(안)]

구 분			사업수량	집행단계(안)
공원 시설	진입도로·주 차장 정비	진입도로	1	실시설계-공사
		주차장	2	실시설계-공사

구축	관리소 신축	관리소	3	- 분소(1) : 공사 - 사무소(2) : 용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야영장 조성 및 정비	야영장	2	- 조성(1) : 용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 정비(1) : 실시설계-공사
	탐방기본시설 정비사업	공중 화장실	6	실시설계-공사
		탐방지원 센터	3	실시설계-공사
	탐방편의시설 조성사업	자연학습장	2	실시설계-공사
		무장애 탐방인프라	1	실시설계-공사
		탐방로	4.3km	실시설계-공사
		저지대 숲체험인프라	1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 환경부

이에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목표인 ‘팔공산국립공원의 가치가 지역민과 국민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탐방체계 선진화·고도화’를 사업목표 기간내에 충실하게 달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연도내 집행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별·단계별로 정밀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무공해차 보급사업’(2023~, 직접수행·지자체보조·민간대행)은 전기자동차·수소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종에 따른 정액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2조 2,63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72억 5,000만원(△20.6%)이 감액된 1조 7,958억 5,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254	2,263,104	2,263,104	1,795,854	△467,250	△20.6
▪ 전기차 보급사업	1,734,000	1,521,770	1,521,770	1,137,770	△384,000	△25.2
▪ 수소차 보급사업	571,350	721,830	721,830	638,580	△83,250	△11.5
▪ 도로재비 산면지 저감사업	-	5,600	5,600	5,600	-	-
▪ 운영비	13,904	13,904	13,904	13,904	-	-

나. 전기차 보급: 차종별 예상수요에 따른 적절한 감액 규모 설정 필요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버스), 전기이륜차의 구매 자금 일부를 정액으로 보조(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하여 무공해차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217억 7,000만원 대비 3,840억원 감액(△25.2%)된 1조 1,37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전기차 보급사업	1,734,000	1,521,770	1,521,770	1,137,770	△384,000	△25.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된 동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방식으로 집행되는 ① 전기승용 계획 물량을 23만 4,000대에서 19만 7,000대로 조정(△37,000대)하여 본예산 7,020억원을 5,910억원으로 감액(△1,110억원) 편성하고, ②전기화물 계획 물량을 5만 4,600대에서 2만 7,300대로 조정(△27,300대)하여 본예산 5,460억원을 2,730억원으로 감액(△2,730억원) 편성하였음.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21,77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4,720백만원 가. 전기차 민간경상보조 (104,720백만원) • 전기승용 26,000대 × 3,000천원 = 78,000백만원 • 전기화물 2,672대 × 10,000천원 = 26,720백만원	1,137,77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4,720백만원 가. 전기차 민간경상보조 (104,720백만원) • 전기승용 26,000대 × 3,000천원 = 78,000백만원 • 전기화물 2,672대 × 10,000천원 = 26,72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417,050백만원 가.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1,417,050백만원) • 전기승용 <u>234,000대</u> × 3,000천원 = 702,000백만원 • 전기버스 1,710대 × 70,000천원 = 119,700백만원 •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290대 × 115,000천원 = 33,350백만원 • 전기화물 <u>54,600대</u> × 10,000천원 = 546,000백만원 • 전기이륜 20,000대 × 1,600천원 × 50% = 16,0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033,050백만원 가.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1,033,050백만원) • 전기승용 <u>197,000대</u> × 3,000천원 = 591,000백만원 • 전기버스 1,710대 × 70,000천원 = 119,700백만원 •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290대 × 115,000천원 = 33,350백만원 • 전기화물 <u>27,300대</u> × 10,000천원 = 273,000백만원 • 전기이륜 20,000대 × 1,600천원 × 50% = 16,000백만원

2025년 5월까지의 동 내역사업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1조 5,217억 7,000만원 중 2,623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고(실행률 17.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차종인 승용 기준으로 7,800억 중 1,619억 7,700만원(실행률 20.8%)이 집행되었으며, 화물의 경우 5,727억 2,000만원 중 837억 7,700만원(실행률 14.6%)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실집행 내역('25.5)]

(단위: 백만원, %)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5월 교부금액 (환경부 기준)	'25년 5월 실집행금액(B) (사업시행주체)	실집행률 (B/A)
	편성 당시	조정(최종) (A)			
승용	780,000	780,000	347,361	161,977	20.8
버 스	일반	119,700	119,700	35,560	10.9
	어린이 통학	33,350	33,350	7,245	7.8
화물	572,720	572,720	263,750	83,777	14.6
이륜	16,000	16,000	6,166	914	5.7
계	1,521,770	1,521,770	660,082	262,352	17.2

동 사업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차종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최근 3개년 간 전기승용 차종의 보급 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24만 5,002대분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0만 8,021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이 지급되어 실집행률이 44.1%에 불과하였고, 2023년도와 2022년도의 실집행률 또한 각각 67.3%, 47.6%로 나타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전기승용 차종의 목표물량 대비 집행물량(2022~2025.5)]

(단위: 대, %)

구분	목표물량		집행물량(B)	미집행 물량(A-B)	실집행률 (B/A)
	편성 당시	조정(최종)(A)			
2022	164,500	162,486	109,413	53,073	67.3
2023	215,200	191,137	91,037	100,100	47.6
2024	233,000	245,002	108,021	136,981	44.1
2025.5.	260,000	223,000*	33,279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자료: 환경부

2025년 5월까지도 전기 승용차종의 경우 3만 3,279대가 보급되어 2025년도 본예산 목표 물량(26만대) 기준 약 12.8%만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만 7,000대분의 전기 승용 보급 목표 물량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1,1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전기승용 차종의 월별 실집행 내역(2023~2025)]

(단위: 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	5,150			9,193	10,934	9,166	7,208	7,353	7,666	8,074	14,296	11,997
'24	7,149			9,533	10,077	11,249	10,108	10,871	10,743	11,284	12,083	14,924
'25	12,430			9,524	11,325	-	-	-	-	-	-	-

주)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수(지자체 집행실적 취합) 기준

자료: 환경부

둘째, 최근 3개년 간 전기화물 차종의 보급 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살

펴보면, 2024년도에는 5만 2,819대분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만 9,981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이 지급되어 실행행률이 37.8%에 불과하였는데, 2023년도와 2022년도의 경우 실행행률이 각각 70.6%, 91.0%로 나타났음.

[전기화물 차종의 목표물량 대비 집행물량(2022~2025.5)]

(단위: 대, %)

구분	목표물량		집행물량(B)	미집행 물량(A-B)	실행행률 (B/A)
	편성 당시	조정(최종)(A)			
2022	41,000	41,003	37,302	3,701	91.0
2023	50,000	60,292	42,571	17,721	70.6
2024	57,272	52,819	19,981	32,838	37.8
2025.5.	57,272	29,972*	7,579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자료: 환경부

다만, 2025년 5월까지의 전기 화물차종 보급 실적은 7,579대로 2025년도 본예산 목표 물량(57,272대) 기준 약 13.2%만이 집행되었고, 조정 물량(29,972대) 기준으로는 약 25.3%가 집행된 상황으로 향후 하반기 시장수요에 따라 조정된 예산의 소진 및 집행 가능성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전기화물 차종의 월별 실적행 내역(2023~2025)]

(단위: 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	6,106			6,206	6,181	4,070	4,208	4,182	2,610	2,674	3,898	2,436
'24	1,968			2,131	1,689	1,661	1,943	1,857	1,775	2,010	2,084	2,863
'25	2,600			2,370	2,609	-	-	-	-	-	-	-

주)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수(지자체 집행실적 취합) 기준
자료: 환경부

2025년도 전기화물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교부 신청한 물량이 50,000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연내 전기화물 목표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종 간 내역 조정 등을 통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²⁾.

셋째, 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감축⁸³⁾을 위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2025년 5월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누적 78만여대에 불과하고,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0만대 이상을 보급해야 하는 상황임.

82)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요, 실적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차종별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83) 수송 부문 감축목표: 98.1백만톤(2018년)→61백만톤(2030년)(△37.8%)

[전기차 보급 실적('25.5 기준)]

(단위: 대)

구 분	보급실적									누적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24년)	'25년				
						1분기	4월	5월	계	
전기차	238,063	164,486	162,605	146,902	712,056	33,501	17,214	21,735	72,450	784,506
승 용	191,755	123,920	115,817	122,675	554,167	28,311	14,247	18,810	61,368	615,535
승 합	3,146	2,074	2,820	3,611	11,651	427	299	241	967	12,618
화 물	43,036	38,471	43,940	20,581	146,028	4,758	2,668	2,682	10,108	156,136
기 타	126	21	28	35	210	5	-	2	7	217

자료: 환경부

또한, 「국가재정법」 84)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정량사업 중 하나로,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보급을 통하여 66만 7,303tCO₂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목표 보급 물량이 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⁸⁵⁾으로 보임.

84)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식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207,654(tCO₂eq)*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짐.

*207,654(tCO₂eq)=1.20(tCO₂eq/대·년)(승용) × 37,000대 + 5.98(tCO₂eq/대·년)(화물) × 27,300대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 정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 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지 누적		
					전체 (B)	감축				
○무공해차 보급사업				2,334,604	2,263,104	2,243,600	756,053	4,536,318	△71,500	△3.1
(1)전기차 보급	○	수송	정량	1,734,000	1,521,770	1,521,770	667,303	4,003,818	△212,230	△12.2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따라서 환경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정된 목표 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증대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⁸⁶⁾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8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 4·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때 차량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차주가 신규로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다. 수소차 보급: 수소승용에 대한 면밀한 실수요 예측 노력 필요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사업은 수소승용, 수소버스(저상·고상), 수소화물, 수소폐기물청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수소버스의 스택연료전지 교체 비용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18억 3,000만원 대비 832억 5,000만원 감액(△11.5%)된 6,38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수소차 보급사업	571,350	721,830	721,830	638,580	△83,250	△1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된 동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수소차 중 승용 차종에 대한 보급 목표 물량을 11,000대에서 7,300대로 조정하여 3,700대분의 지원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승용 1대당 2,250만원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 832억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안)	산출내역
721,83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721,830백만원 가.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721,830백만원) • 수소승용 11,000대 × 22,500천원 = 247,500백만원 • 수소버스(저상) 1,190대 × 210,000천원 = 249,900백만원 • 수소버스(고상) 810대 × 260,000천원 = 210,600백만원 • 수소화물 10대 × 250,000천원 = 2,500백만원 • 수소폐기물청소차 10대 × 720,000천원 = 7,200백만원 • 스택교체 118개 × 35,000천원 = 4,130백만원	638,58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38,580백만원 가.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638,580백만원) • 수소승용 7,300대 × 22,500천원 = 164,250백만원 • 수소버스(저상) 1,190대 × 210,000천원 = 249,900백만원 • 수소버스(고상) 810대 × 260,000천원 = 210,600백만원 • 수소화물 10대 × 250,000천원 = 2,500백만원 • 수소폐기물청소차 10대 × 720,000천원 = 7,200백만원 • 스택교체 118개 × 35,000천원 = 4,130백만원

2025년 5월까지의 동 내역사업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7,177억원 중 620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실행률 8.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차종인 승용 기준으로 2,467억 2,000만원 중 140억 8,500만원(실행률 5.7%)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사업 실행 내역('25.5)]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5월 교부금액 (환경부 기준)	'25년 5월 실집행금액(B) (사업시행주체)	실집행률 (B/A)
	편성 당시	조정(최종) (A)			
승용	247,500	246,720	49,883	14,085	5.7
버 스	저상	249,900	55,860	19,635	7.9
	고상	210,600	74,100	26,910	12.7
화물차	2,500	2,500	-	-	-
청소차	7,200	7,200	3,600	1,440	20
계	717,700	717,700	183,443	62,070	8.65

물량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간 수소승용 차종의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소승용 1만대분에 해당하는 2,250억원이 감액되어 목표물량이 17,535대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82대가 집행되어 실행률은 55.8%에 불과했으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실행률 또한 각각 26.0%, 36.4%로 연례적으로 목표물량 대비 집행물량이 저조하였음.

[수소승용 차종의 목표물량 대비 집행물량(2022~2025.5)]

(단위: 대, %)

구분	목표물량		집행물량(B)	실집행률 (B/A)
	편성 당시	조정(최종)(A)		
2022	27,650	17,535*	9,782	55.8
2023	16,000	15,877	4,131	26.0
2024	6,800	6,867	2,503	36.4
2025.5.	11,000	7,300**	639	8.8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용 △1만대 감액, 타차종과 일부 조정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시장에서의 수소승용 구매가 저조하였던 사유로 현재 운행이 가능한 수소 승용 차종이 2018년 3월 출시된 1종에 불과⁸⁷⁾하고, 해당 차종의 2세대 신차 출시가 예정보다 지연되어 수요자들이 구매를 보류함에 따라 목표 대비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입장으로, 2025년 5월까지의 수소승용 실집행물량이 639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본예산 계획 당시의 목표 물량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물량 기준 수소차 보급 사업 실집행 내역('25.5.)]

(단위: 대)

구분(차종)		'25년 예산목표물량		'25년 5월 실집행물량
		편성 당시	조정(최종)	
승용		11,000	10,964	639
버스	저상	1,190	1,190	95
	고상	810	813	105
화물차		10	10	-
청소차		10	10	2

자료: 환경부

다만, 2025년 6월 수소승용 2세대 신차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어 하반기

87) [수소차 보급 사업 지원 차종별 개요]

구 분	승용	승합		화물	청소차
	넥쏘 (프리미엄)	일렉시티 FCEV(저상)	유니버스 FCEV(고상)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	에이엠수소 암롤트럭, 에이엠수소압축 진개형 차량
국고 보조금	2,250만원	2.1 억원	2.6 억원	2.5 억원	7.2억원
연료량	6.3kg	33.99kg	33.99kg	41kg	27kg
출시	(1세대) '18년 3월~ (2세대) '25년 6월~	'19년(시범), '20년(양산)~	'23년 4월	'22년 11월	'23년 10월

수소 승용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상반기에 비해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환경부는 조정된 물량에 대하여 적기에 원활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적절히 실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감축⁸⁸⁾을 위하여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2025년 5월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누적 3만 9,000여대에 불과하고,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만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임.

[수소차 보급 실적('25.5 기준)]

(단위: 대)

구 분	보급실적									누적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24년)	'25년				
						1분기	4월	5월	계	
수소차	19,477	10,256	4,673	3,784	38,190	732	232	159	1,123	39,313
승 용	19,341	10,104	4,294	2,717	36,456	566	111	34	711	37,167
승 합	131	152	368	1,044	1,695	166	121	125	412	2,107
화 물	5	-	5	5	15	-	-	-	-	15
청 소	-	-	6	18	24	-	-	-	-	24

자료: 환경부

또한, 「국가재정법」⁸⁹⁾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도입된

88) 수송 부문 감축목표: 98.1백만톤(2018년)→61백만톤(2030년)(△37.8%)

89)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정량사업 중 하나로, 환경부는 2025년도 수소차 보급을 통하여 8만 8,750tCO₂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목표 보급 물량이 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⁹⁰⁾으로 보임.

[2025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 정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 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지 누적		
					전 체 (B)	감축				
○무공해차 보급사업				2,334,604	2,263,104	2,243,600	756,053	4,536,318	△71,500	△3.1
(2)수소차 보급	○	수송	정량	571,350	721,830	721,830	88,750	532,500	150,480	26.3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따라서 환경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정된 목표 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소차 시장의 자생력 증대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식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4,366(tCO₂eq)*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짐.

*4,366(tCO₂eq) = 1.18(tCO₂eq/대·년)(승용) × 3,700대

(2)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1633-31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2011~, 직접수행·민간보조·지자체보조) 사업은 전기자동차·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완속·급속 충전기 등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9,284억 2,300만원) 대비 630억원(△6.8%)이 감액된 8,654억 2,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734,441	928,423	928,423	865,423	△63,000	△6.8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36,500	623,750	623,750	560,750	△63,000	△10.1
▪ 수소충전소 구축	181,720	196,280	196,280	196,280	-	-
▪ 운영비 등	116,221	108,393	108,393	108,393	-	-

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 충전기 수요조사 물량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가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민간의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6,237억 5,000만원 대비 630억원 감액(△10.1%)된 5,60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36,500	623,750	623,750	560,750	△63,000	△10.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된 동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설치되는 초급속(350kW)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 목표 물량을 3,790기에서 2,950기로 840기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1기당 75백만원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 63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안)	산출내역
623,750	○ 민간자본보조(320-07) : 532,250백만원 -초급속 <u>3,790기</u> ×150백만원×50% = <u>284,250백만원</u> -스마트 제어 71,000기×3백만원(정액) = 213,000백만원 -스마트 제어 교체 20,000기×1.5백만원(정액) = 30,000백만원 -이륜교환형 500기×20백만원×50% = 5,000백만원	560,750	○ 민간자본보조(320-07) : 469,250백만원 -초급속 <u>2,950기</u> ×150백만원×50% = <u>221,250백만원</u> -스마트 제어 71,000기×3백만원(정액) = 213,000백만원 -스마트 제어 교체 20,000기×1.5백만원(정액) = 30,000백만원 -이륜교환형 500기×20백만원×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91,500백만원 -초급속 610기 × 150백만원 = 91,5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91,500백만원 -초급속 610기 × 150백만원 = 91,500백만원

동 내역사업에서는 초급속(350kW)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① 국가가 직접설치·소유하는 방식과 ②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집행되는 초급속 충전기의 목표 물량을 축소하여 조정하였음.

[급속 충전기 사업 방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예산 내역	수행기관	구축·지원대상	지원·선정 방법
직접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지자체 등	직접수행(조달입찰 등)
민간 자본 보조	한국환경공단	상용차外 사용 충전시설 (고속도로, 주차장 등)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상용차 전용 충전시설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본보조 방식으로 설치되는 급속 충전기의 설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모두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의 실집행률이 민간 자본보조 방식 대비 각각 13.2%p, 29.9%p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급속 충전기 설치 목표물량 대비 집행물량(2023~2025)]

(단위: 기,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당초	변경							
23	직접	예산	30,000	30,000	30,000	40,476	70,476	55,517	14,959	-	78.8
		물량	200	200	412	1,140	1,552	1,422	130	-	
	보조	예산	142,500	142,500	142,500	23,244	165,744	108,687	55,857	-	65.6
		물량	1,900	1,900	5,536	1,126	6,662	1,550	5,112	-	
24	직접	예산	30,000	30,000	30,000	14,959	44,959	37,917	6,446	596	84.3
		물량	200	200	200	130	470	289	56	4	
	보조	예산	217,500	217,500	119,500	55,857	175,357	95,383	35,210	44,764	54.4
		물량	2,900	2,900	1,590	5,112	6,702	1,015	1,972	595	
25	직접	예산	91,500	91,500	91,500	6,446	97,646	300	-	-	0.3
		물량	610	610	610	56	666	2	-	-	
	보조	예산	284,250	221,250	185,500	35,210	220,710	8,993	-	-	4.1
		물량	3,790	2,950	2,474	1,972	4,446	504	-	-	

주) 직접설치의 경우 기당 150백만원, 민간보조의 경우 국비보조 50%로 기당 75백만원 지원

환경부는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사전에 설치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크지 아니한 반면, 민간보조

방식의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충전기 구축 공사 완료 시점이 연말에 집중되어 확인 이후 잔금 집행 과정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추진 절차]



이러한 사유로 민간 급속 충전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례적인 이월·불용이 발생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설치 수요 2,950기를 제외한 840기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은 연내 집행률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의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측면에서 불

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국가재정법」⁹¹⁾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성사업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목표 보급 물량이 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이행 과정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 분	감축사업 분류		정량/ 정성/ R&D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정 의	유형		'24년 (A)	'25년(안)		'25년	'30년까지 누적		
					전체 (B)	감축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4,441	928,423	836,446	-	-	193,982	26.4
(1)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	○	수송	정성	436,500	623,750	623,750	-	-	187,250	42.9

자료: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안번호 2203519)

91)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의 수요가 확인된 2,950기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자의 자진 포기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하수관로정비(1132-31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하수관로정비’(1992년~,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하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대심도하수저류시설’의 네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1조 6,26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107억 1,200만원 대비 70억원(0.4%) 증액된 1조 7,17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 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하수관로정비	1,281,593	1,626,418	1,710,712	1,717,712	7,000	0.4
▪ 도시침수대응	327,514	313,757	313,757	320,757	7,000	2.2
▪ 하수관로정비	935,943	1,295,067	1,379,361	1,379,361	-	-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4,405	2,594	2,594	2,594	-	-
▪ 대심도하수저류 시설	13,731	15,000	15,000	15,000	-	-

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연내 집행가능성 확보 필요

내역사업인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계속사업 91개소(3,057억 5,700만원), 신규사업 16개소(80억원)에 대한 공사비로 총 3,13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107개 사업 중 2개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 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5년 추경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3,757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13,757백만원 가. 계속사업 305,757백만원 • 91개소 x 3,359백만원 나. 신규사업 8,000백만원 • 16개소 x 500백만원	320,757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20,757백만원 가. 계속사업 312,757백만원 • 91개소 x 3,436백만원 나. 신규사업 8,000백만원 • 16개소 x 500백만원

[제2회 추경안 대상 세사업명]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세사업명	본예산	순증	추경안
2개소		2,818	7,000	9,818
경남 창원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100	5,000	5,100
강원 삼척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2,718	2,000	4,718

자료 : 환경부

제2회 추경안은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2개소를 증액하는 것으로, ①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은 펌프장 부지 선정에 따른 보상비 50억원, ② 삼척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은 공사비 부족분 20억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⁹²⁾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⁹³⁾

최근 건설투자 조정⁹⁴⁾이 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금년 내 집행 가능한 SOC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준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 9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93)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94)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임(2025.6.1.).

동 사업의 추경안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기습 폭우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환경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예측이 어려운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시적이고 긴급한 재정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측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창원시 도시침수예방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률은 0%임.

[삼척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집행률(' 25.5 기준)]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사업명	예산	집행	집행률
경남 창원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100	0	0

자료 : 환경부

설계 완료와 별개로 추경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의 집행이 가능할지라도, 실시 설계에 따라 주민 민원의 가능성, 행정절차 지연, 매입 계획 변경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삼척시의 경우 2025년 12월부터 추진 예정인 펌프장 구조물 및 방류관로 설치 계획에 따라 공사비 부족액 20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추경예산의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2025년 5월 기준 삼척시의 실집행률은 1.6%로, 2025년 본예산 27억 1,800만원 중 4,300만원만 집행된 상황임.

[삼척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집행률(' 25.5 기준)]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사업명	예산	집행	집행률
강원 삼척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2,718	43	1.6

자료 :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공정 관리, 설계 완료 시점, 계약 절차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소관 】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축을 중심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5조원(세출 20.2조원, 세입 10.3조원)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❶“속도”, ❷“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 그리고 ❸“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 중심 편성임.

첫째,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함.

둘째,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함.

셋째,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함.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❶경기 진작과 ❷민생 안정 중심으로 편성함.

첫째,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할 계획임.

②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2조 7천억원 편성함.

③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에 2천억원을 편성함 .

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을 편성함.

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편성함.

②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 구축 예산 1조 6천억원을 편성함.

③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 편성함.

【 참고자료 】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 ①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 요 내 용	①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②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③ 세입 경정	10.3조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0.3조원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 구조

구 분	비고
❶ 지출구조조정 5.3조원	추경재원 30.5조원
❷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❸ 외평채 조정 3.0조원	
❹ 국채 발행 19.8조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1조 5,837억원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125억원(4.1%)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450억원(7.1%)이 증액 편성됨.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1조 3,030억원(7.3%) 증액,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150억원(0.1%) 증액, 임금채권보장기금은 81억원(1.0%) 증액 편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단위: 억원, %)

회계·기금별	'24년	'25년			증감 (B-A)	증감율 (%)
	본예산	본예산	1회추경 (A)	2회추경안 (B)		
▪ 총지출(a+b)	336,825	353,452	356,255	372,092	15,837	4.4
－ 예산지출(a)	58,151	57,549	58,146	60,722	2,575	4.4
· 일반회계	51,306	51,469	51,766	53,891	2,125	4.1
· 특별회계	6,845	6,080	6,380	6,831	450	7.1
－ 기금지출(b)*	278,674	295,903	298,109	311,370	13,261	4.4
· 고용보험	164,058	178,066	178,219	191,249	13,030	7.3
· 산재보험	98,222	100,176	100,242	100,392	150	0.1
· 임금채권	5,431	6,285	7,793	7,875	81	1.0

* 기금 지출 총액은 추경 대상이 아닌 장애인고용기금, 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된 것임

(2) 세부사업별 현황

고용노동부는 ①고용안전망 강화, ②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③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지원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일반회계	예특회계	기금
고용안전망	①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		①구직급여(+12,929억)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①내일배움카드(일반) (+160억) ②취약계층취업촉진 (+20억)		①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101억)
민생회복지원	①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28억) ②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258억)	①진폐위로금(+450 억)	①체불청산지원용자 (+81억) ②클린사업장조성지원 (+150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등 2개 사업에 1조 4,581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위한 예산 1조 2,929억원을.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및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을 위해 1,652억원을 편성함

둘째,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내일배움카드(일반) 등 3개 사업에 281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예산 160억원을, ②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예산 20억을, ③청년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훈련 확대 예산 101억을 증액 편성함.

셋째,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용자 등 5개 사업에 1,067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예산 81억을, ②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예산 128억을, ③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을 위한 예산 450억을, ④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258억을, ⑤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장치 지원 확대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증액 사업내역]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5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2차추경 (순증)	
	① 고용안전망 강화			
1	구직급여	109,171	+12,929	▪ 지원 확대(+18.7만명)
2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	+1,652	▪ 지원 확대(+5.5만명)
	②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3	내일배움카드(일반)	5,802	+160	▪ 일반고 특화 자원 확대(1,820명)
4	취약계층취업촉진	92	+20	▪ 5개 권역 취업박람회 개최
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192	+101	▪ 공동훈련센터(+5개소) ▪ 대중소상생아카데미(+50개소)
	③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			
6	체불청산지원용자	704	+81	▪ 피해근로자 대출 추가지원
7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218	+128	▪ 특고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8	진폐위로금	837	+450	▪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원
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851	+258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지원 확대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8	+150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Ⅱ. 검토의견

[고용정책실]

(1) 취약계층취업촉진(일반회계, 1070-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2006~, 직접)은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심리안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91억 9,900만원 대비 20억원(21.7%) 증액된 111억 9,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예산	본예산 (A)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B)		
■ 취약계층취업촉진	6,185	9,199	9,199	11,199	2,000	21.7
·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	-	-	2,000	2,000	순증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1,920	3,817	3,817	3,817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운영	2,791	3,908	3,908	3,908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접운영	1,474	1,474	1,474	1,474	-	-

* 자료: 고용노동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권역별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 우려⁹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여건에 맞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임.

[권역별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안]

구분	세부 사항			
추진 방향	중앙-지방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 맞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 고용시장 활력 제고			
	① 중앙·자치단체, 지역 금융권, 유관기관(대학일자리+센터 등) 다자 협력 추진 *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등 제공, (자치단체) 구인수요(기업) 발굴 등 지역 인프라 제공			
	② 비수도권 중심으로 광역(5개 이상) 단위 우선 개최			
	③ 청년 구직자 중심으로 지역 우수기업과 일자리 매칭 주력			
	④ 구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정보 제공			
	⑤ SNS 이벤트, 청년리더 특강 등 홍보 효과 극대화 → 지역 고용시장 활력 UP			
추경안	20억원(5개 권역, 각 4억원)			
추진 일정	7월	8~9월	9~11월	12월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달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계약 (지역고용센터)	- 사업 운영 (수탁기관) - 지도·점검 (지역고용센터)	-결과보고 및 정산 (지역고용센터)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 자료: 고용노동부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강원·경상·전라·충청 등 권역별 자치단체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5개 권역에 각각 4억원을 지원하며, 채용박람회는 해당 권역의 지역고용센터 주관 하에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95)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 제조업 등 핵심 고용계층의 일자리가 감소(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변동추이: 청년층 3.9%, 40~59세 0.8%, 제조업 1.5%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인구가 전년동월 대비 56,000명 증가하였음.

〈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과거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의 추진 이력을 살펴보면, 2023년 이전까지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나 예산액은 매년 감소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마다 차별성 없이 유사한 박람회가 행사성 사업으로 중복 추진되면서 채용박람회의 참여기업 채용성과가 부진하다는 국회 지적⁹⁶⁾에 따른 것임.

[연도별 취약계층취업지원 채용박람회 예산 내역]

회계연도	예산내역
2018년	예산: 1,478백만원 - 일반(750백만원) : 15회 × 50백만원 - 테마중심(700백만원) : 7회 × 10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19년	예산: 518백만원 - 일반(200백만원) : 4회 × 50백만원 - 테마중심(290백만원) : (3회 × 100백만원) - 1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20년	예산: 478백만원 - 일반(150백만원) : 3회 × 50백만원 - 소규모(300백만원) : 15회 × 2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21년	예산: 378백만원 - 일반(150백만원) : 3회 × 50백만원 - 소규모(200백만원) : 10회 × 2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22년	예산: 340백만원 - 일반(135백만원) : 3회 × 45백만원 - 소규모(181백만원) : 10회 × 18.1백만원 - 제주도(24백만원) : 1회 × 24백만원
2023년	예산: 274백만원 - 일반(150백만원) : 3회 × 50백만원 - 소규모(100백만원) : 5회 × 20백만원 - 제주도(24백만원) : 1회 × 24백만원

* 주: 2024년 이후에는 채용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자료: 고용노동부

96) 「2016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2017. 8.

일자리·취업 문제는 지역 내 주요 현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내 관계 기관은 이미 지역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박람회, 채용박람회, 만남의 날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고, 실제 2025년 9월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된 지역별 채용박람회는 약 18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5년 9월 이후 개최 예정 채용박람회]

권역	주최기관	행사명	참가 기업수 (개소)	개최시기
서울	북부권역새일센터	2025 서울우먼업페어(가칭)	50	9. 9.
경기	수원시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하반기)	50	10. 28.
	용인시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50	10월 중
	안산시	2025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50	9. 25.
	시흥시	2025 K-시흥 채용박람회	50	10월 중
경상	해수부/해군	2025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100	9.4.
	부산시	2025 부산 잡(JOB)페스티벌	150	10. 27.
	경상남도	2025년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 박람회	100	9.2.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5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	65	9. 26.~27.
	경상북도/포항시	2025 포항취업박람회 (가칭)	50	10. 29.
전라	전남대 대학알자리플러스센터	2025 전남대학교 JOB FESTA	50	10. 30.
	완주군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100	9. 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62	9. 9.
	전라남도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50	9월 하순
충청	대전시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50	9. 30.
	대전시	중장년 일자리 채용 박람회	50	10.29(예정)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5년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70	9. 25.
	충남경제진흥원	(가칭)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	80	9. 23.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지역 중심 행사 외에도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 방위사업 채용 정보박람회 등 산업별 특화 채용행사 및 민간 채용 플랫폼이 주관하는 박람회도 운영되고 있고, 최근 전통적인 오프라인 박람회를 넘어 비대면 온라인 채용관, 기업 현장 체험 중심의 잡투어, 직무 이해를 돕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업성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이 2023년 이전에 추진된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과 차별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추정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추진상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채용박람회 등 채용행사는 지역산업·고용 문제의 현장 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 대기업보다는 각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측면⁹⁷⁾이 있는 점, 지역 특성 반영 및 지역 내 협업을 통한 성과제고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선 지역기관이 주관하여 지역기관과 협업하여 개최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97) 대기업은 주로 공채 시스템을 통해 구인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주로 채용정보 제공이나 기업 홍보행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평소 구직자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행사를 통해 구직자와 직접 접촉하며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인식개선 및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함.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2012년~, 직접)은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고 함)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동 사업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851억 3,000만원 대비 257억 5,000만원(2.9%) 증액된 9,108억 8,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837,516	885,130	885,130	910,880	25,750	2.9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836,243	882,899	882,899	907,899	25,000	2.8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273	2,231	2,231	2,981	750	33.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0년 12월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등 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2022년 7월부터는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확대 적용 대상]

적용 시기	확대 적용 대상
2020. 12.	예술인
2021. 7.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⑦ 방문판매원 ⑧ 화물차주 ⑨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⑩ 방과후학교 강사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2. 1.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 ① 퀵서비스 기사 ② 대리운전 기사
2022. 6.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2022. 7.	노무제공자 5개 직종 ①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②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자 ③ 관광통역안내사 ④ 골프장 캐디 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지원대상별 지원요건 및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월 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월 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와 전년도 종합소득 요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고, 요건을 갖추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에 고용되어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와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⁹⁸⁾.

98) 단, 2025년 가입자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됨

[지원대상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사근로자
지 원 요 건	사업 규모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사업규모와 무관	사업규모와 무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단,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 지원 제외)
	보수 수준	월 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 관련 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월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270만원 미만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소득 수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좌 동)	(좌 동)	(좌 동)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예술인 및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가사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좌 동)	(좌 동)	(좌 동)

< 목표지원인원의 합리적이고 면밀한 추계 필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대상별로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임금 상승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u>141,958백만원</u> =419,951명×172만원×2.05%×80%×12개월	<u>149,967백만원</u> =434,090명×176만원×2.05%×80%×12개월
	국민연금	<u>687,611백만원</u> =439,916명×181만원×9%×12개월	<u>700,613백만원</u> =445,965명×185만원×9%×80%×12개월
예술인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 <u>359백만원</u> =2,210명×105.6만원×1.6%×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42백만원 =520명×104.7만원×0.8%×80%×12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u>396백만원</u> =2,438명×105.6만원×1.6%×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본예산과 동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 <u>3,460백만원</u> =13,475명×167만원×1.6%×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u>13,436백만원</u> =106,934명×163.5만원×0.8%×80%×12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u>4,638백만원</u> =18,059명×167만원×1.6%×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u>16,210백만원</u> =129,017명×163.5만원×0.8%×80%×12개월
가사근로자	합계	<u>1,596백만원</u>	<u>2,346백만원</u>
	고용보험	기존 <u>950명</u> ×1,230,000원×1.64%×12개월 외국인 <u>300명</u> ×1,230,000원×1.64%×12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7.2%*×6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3.6%**×6개월 *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장 지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기존 <u>1,525명</u> ×1,230,000원×1.64%×12개월 외국인 <u>300명</u> ×1,230,000원×1.64%×12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7.2%*×6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3.6%**×6개월 *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장 지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국민연금	기존 <u>950명</u> ×1,230,000원×7.2%×12개월 '25 신규 <u>335명</u> ×1,230,000원×7.2%×6개월 +단수조정 650,440원	기존 <u>1,525명</u> ×1,230,000원×7.2%×12개월 '25 신규 <u>335명</u> ×1,230,000원×7.2%×6개월 +단수조정 399,640원

먼저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419,951명에서 434,090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임금을 172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민연금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433,916명에서 445,965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임금을 181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25년 1월 1,517만 4천명에서 같은 해 5월 1,558만명으로 2.7% 가량 증가하였고, 국민

연금 가입자 수(월 소득 270만원 미만)도 2025년 1월 579만 9천명에서 5월 582만 9천명으로 0.5% 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가할 예상 지원자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2024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의 상승률 1.7%만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은 172만원, 국민연금은 181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1~4월 실제 월 평균임금은 고용보험이 175만 5천원, 국민연금이 185만 1천원으로 각각 2%, 2.9%씩 증가하여 이를 반영했다는 입장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매년 사업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지원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이 증가하고, 인증 기관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본예산 편성 인원보다 많은 가사근로자가 동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실제로 아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월별 지원 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1~4월 평균 지원인원은 2025년이 842,916명으로 2024년 884,947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1~4월 평균 지원금액은 2025년이 803억 600만원으로 2024년 716억 4,900만원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4월 평균 지원인원이 2023년부터 20

25년까지 매년 증가(예술인: 2,535명→2,720명→2,839명, 노무제공자: 15,613명→120,409명→147,077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월별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평균 (1~4월)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3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294,283	7,646	333,322	8,883	362,191	9,774	382,371	10,991	343,042	9,324
		국민연금	380,979	45,558	405,192	50,265	424,867	53,769	428,555	54,584	409,898	51,044
		소계	675,262	53,204	738,514	59,148	787,058	63,543	810,926	65,575	752,940	752,94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7,655	823	86,476	815	57,046	515	70,494	690	75,418	711
		국민연금	624	55	4,794	529	3,486	248	839	63	2,436	224
		소계	88,279	878	91,270	1,344	60,532	763	71,333	753	77,854	935
	예술인	고용보험	2,978	32	2,534	34	2,127	32	2,502	34	2,535	3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0,213	281	9,973	283	11,559	299	30,708	599	15,613	366
	합계		776,732	54,395	842,291	60,809	861,276	64,637	915,469	66,961	848,942	61,701
2024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430,555	11,495	427,086	11,405	436,175	12,230	442,657	13,254	434,118	12,096
		국민연금	455,097	59,456	444,295	58,466	451,010	59,899	452,913	60,392	450,829	59,553
		소계	885,652	70,951	871,381	69,871	887,185	72,129	895,570	73,646	884,947	71,649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93,029	909	92,706	912	87,545	861	84,531	861	89,453	886
		국민연금	147	13	3,155	312	3,683	272	816	68	1,950	166
		소계	93,176	922	95,861	1,224	91,228	1,133	85,347	929	91,403	1,052
	예술인	고용보험	3,432	40	2,649	37	2,521	35	2,278	32	2,720	3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15,188	1,471	118,501	1,541	118,969	1,546	128,979	1,723	120,409	1,570
	합계		1,097,448	73,384	1,088,332	72,673	1,099,903	74,843	1,112,174	76,330	1,099,479	74,308
2025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437,084	24,147	408,449	11,023	415,277	11,365	417,420	12,651	419,558	14,797
		국민연금	446,531	97,160	418,718	55,202	415,264	54,953	412,918	54,721	423,358	65,509
		소계	883,615	121,307	827,167	66,225	830,541	66,318	830,338	67,372	842,916	80,306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8,854	861	93,985	959	74,268	726	83,806	900	85,228	862
		국민연금	79	5	2,293	199	1,752	141	344	26	1,117	93
		소계	88,933	866	96,278	1,158	76,020	867	84,150	926	86,345	954
	예술인	고용보험	2,965	35	3,315	37	2,312	30	2,765	33	2,839	3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48,606	1,958	143,753	1,893	146,184	1,868	149,763	1,972	147,077	1,923
	합계		1,124,119	124,166	1,070,513	69,313	1,055,057	69,083	1,067,016	70,303	1,079,177	83,216

* 자료: 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

관은 2022년 35개소에서 2025년 3월 120개소로 약 240% 증가하였고,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2022년 370명에서 2025년 3월 3,836명으로 약 937% 증가했으며, 1~5월 평균 지원인원도 2023년 507명, 2024년 1,522명, 2025년 3,9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그 기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해당년도	2022	2023	2024	2025.3
기관수	35	88	122	120
근로자수	370	1,190	3,607	3,836

* 근로자 수의 경우 매 분기말 조사자료로 사회보험료 지원인원과 상이함

** 자료: 고용노동부

[2023~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가사근로자 지원 인원]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월평균 (1~5월)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2023	가사 근로자	고용보험	294	5	297	6	310	6	309	6	264	6	1,474	29	295	6
		국민연금	195	18	222	21	233	22	219	21	190	19	1,059	101	212	20
		소계	489	23	519	27	543	28	528	27	454	24	2,533	130	507	26
2024	가사 근로자	고용보험	1,001	20	893	20	1,132	23	1,010	21	863	20	4,899	105	980	21
		국민연금	553	60	542	59	520	56	528	57	566	61	2,709	293	542	59
		소계	1,554	80	1,435	79	1,652	79	1,538	79	1,429	81	7,608	398	1,522	80
2025	가사 근로자	고용보험	2,868	61	2,690	60	2,315	51	2,936	60	2,689	60	13,498	293	2,700	59
		국민연금	1,341	143	1,295	140	1,227	133	1,195	128	1,134	122	6,192	668	1,238	134
		소계	4,209	205	3,985	200	3,542	185	4,131	189	3,823	183	19,690	961	3,938	192

* 월별 정산보고 실적으로 작성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하는 사업 참여자를 반영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수를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추계하여 향후 적정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1년~, 직접)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457억 900만원 대비 1,651억 5,600만원(19.5%) 증액된 1조 108억 6,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국민취업지원제도	942,515	845,709	845,709	1,010,865	165,156	19.5
· I 유형	762,373	714,087	714,087	853,100	139,013	19.5
· II 유형	103,193	130,657	130,657	156,800	26,143	20
· 일경험 프로그램	75,984	-	-	-	-	-
· 전산망 강화	965	965	965	965	-	-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임.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는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I 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역사업임.

II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계층⁹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취업활동비용¹⁰⁰⁾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99)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구직단념청년, 산재로 장해를 입은 자 등이 포함됨

100)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훈련참여지원수당, ③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훈련참여지원수당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③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급됨.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 발 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청년층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또한 I 유형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그들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최대 6개월 지급)의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I·II유형 사업 참여자의 취업 성공 후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창업 후 12개월 동안 근속을 유지하면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

[부양가족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개요]

구 분	부양가족수당	취업성공수당
대상자	I 유형 사업 참여자	I·II유형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II유형 중 특정계층참여자
지급요건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다음의 ①소득요건과 ②근로조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 ①소득요건: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 업(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 등 (노무제공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수준	최대 6개월간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청년층의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 유형 지원 인원 확대를 위하여 1,390억 1,300만원을, II유형 지원 인원 확대 및 건설업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26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 ('25) 845,709백만원 → ('25추경) 1,010,865백만원, 165,156백만원 증액 * (목표인원) 30.5만명 → 36만명(5.5만명)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25) 714,087백만원 → ('25추경) 853,100백만원, 139,013백만원 증액 * (목표인원) 21.5 → 24.2만명(+2.7만명) - (산출) 구직촉진수당 117,705백만원(50만원×5.4회×43,595명) 부양가족수당 4,496백만원(15만원×5.4회×5,550명) 취업성공수당 16,812백만원(62.5만원×26,900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25) 130,657백만원 → ('25추경) 156,800백만원, 26,143백만원 증액 * (목표인원) 9 → 11.8만명(+2.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 건설업 퇴직자 1만명)) - (산출) ① 청년 7,532백만원 1단계 참여수당 17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284,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민간위탁비 45만원*10,000명*0.94(IAP수립률) ② 중장년 6,401백만원 1단계 참여수당 170,000원*8,000명*0.94(IAP 수립률) 2단계 참여수당 284,000원*8,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민간위탁비 50만원*8,000명*0.94(IAP수립률) ③ 건설업 퇴직자 12,210백만원 가) 1단계 참여수당 19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참여수당 추가 10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나)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2,904백만원 (훈련수당) 284,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훈련추가) 200,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민간위탁비 6,580백만원(70만원*10,000명*0.94(IAP수립률))

I 유형의 경우 본예산에 더하여 구직촉진수당 45,595명분, 부양가족수당 5,550명분, 취업성공수당 26,900명분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II 유형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지원 인원을 각각 10,000명과 8,000명씩 추가하고 건설업 퇴직자 10,000명을 추가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작년 동기 대비 늘

어난 상황이고,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유도하여 재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실제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1~5월 수급자격 인정자 수는 I 유형이 114,262명으로 작년 동기 105,593명 대비 8,669명(8.2%) 많고, II유형이 31,355명으로 작년 동기 26,860명 대비 4,495명(16.7%)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3~2025년 월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평균 (1~5월)
2023	I 유형	15,597	16,712	20,045	19,136	23,727	95,217	19,043
	II 유형	4,726	5,270	6,366	6,051	7,342	29,755	5,951
	계	20,323	21,982	26,411	25,187	31,069	124,972	24,994
2024	I 유형	20,530	16,326	20,078	20,973	27,686	105,593	21,119
	II 유형	5,111	4,406	5,180	5,698	6,465	26,860	5,372
	계	25,641	20,732	25,258	26,671	34,151	132,453	26,491
2025	I 유형	19,521	23,881	26,264	25,847	18,749	114,262	22,852
	II 유형	4,490	5,476	5,858	7,903	7,628	31,355	6,271
	계	24,011	29,357	32,122	33,750	26,377	145,617	29,123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건설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5만명(△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즉, 늘어나고 있는

사업 참여 수요를 반영하고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여짐.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4. 4			2025. 3			2025. 4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28,693	100.0	261	28,589	100.0	193	28,887	100.0	194	0.7
○ 농 립 어 업	1,562	5.4	5	1,309	4.6	-79	1,427	4.9	-134	-8.6
○ 제 조 업	4,521	15.8	100	4,399	15.4	-112	4,397	15.2	-124	-2.7
○ 건 설 업	2,098	7.3	5	1,932	6.8	-185	1,948	6.7	-150	-7.2
○ 도매 및 소매업	3,242	11.3	-39	3,223	11.3	-26	3,239	11.2	-3	-0.1
○ 운수 및 창고업	1,690	5.9	52	1,686	5.9	5	1,716	5.9	27	1.6
○ 숙박 및 음식점업	2,312	8.1	29	2,327	8.1	56	2,313	8.0	1	0.1
○ 정보통신업	1,079	3.8	68	1,151	4.0	61	1,151	4.0	72	6.6
○ 금융 및 보험업	745	2.6	6	798	2.8	65	810	2.8	65	8.8
○ 부 동 산 업	525	1.8	-23	520	1.8	-8	517	1.8	-8	-1.5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02	4.9	45	1,463	5.1	37	1,516	5.2	113	8.1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76	4.8	-66	1,334	4.7	-24	1,346	4.7	-29	-2.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18	4.6	19	1,388	4.9	87	1,369	4.7	51	3.9
○ 교육 서비스업	1,858	6.5	-49	1,894	6.6	30	1,925	6.7	68	3.6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63	10.3	93	3,129	10.9	212	3,180	11.0	218	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36	1.9	15	529	1.9	29	539	1.9	3	0.6
○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26	3.9	-3	1,155	4.0	34	1,153	4.0	27	2.4
○ 기타 ¹⁾	343	1.2	5	353	1.2	11	340	1.2	-3	-0.8

*자료: 통계청, 2025년 4월 고용동향

다만, 유형별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2025년 5월까지의 II유형 청년층 참여자 수는 18,512명으로 목표 인원인 68,000명의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목표달성률이 월 기준[5월 기준 41.7%{=(5/12)×100}]에 미치지 못함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II유형 청년층의 참여자를 1만명

추가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청년층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2~2025 유형별 목표 참여 인원 및 실제 참여 인원]

(단위: 명, %)

유형		연도	참여 인원 (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목표	실제	
I 유형	요건심사형	2022	250,000	86,233	34.5
		2023	200,000	83,595	41.8
		2024	88,100	88,431	100.4
		2025. 5.	90,000	44,757	49.7
	선발형 비경활	2022	80,000	30,242	37.8
		2023	60,000	28,697	47.8
		2024	20,000	26,690	133.5
		2025. 5.	20,000	14,684	73.4
	선발형 청년특례	2022	170,000	100,495	59.1
		2023	140,000	114,454	81.8
		2024	140,000	134,543	96.1
		2025. 5.	105,000	54,821	52.2
II 유형	특정계층	2022	10,000	12,983	129.8
		2023	20,000	15,029	75.1
		2024	9,870	12,535	127.0
		2025. 5.	12,000	5,679	47.3
	청년층	2022	80,000	37,801	47.3
		2023	40,000	39,709	99.3
		2024	40,000	40,259	100.6
		2025. 5.	68,000	18,512	27.2
	중장년층	2022	10,000	14,046	140.5
		2023	10,000	14,565	145.7
		2024	9,810	12,767	130.1
		2025. 5.	10,000	7,164	71.6

* 자료: 고용노동부

(4) 구직급여(고용보험기금, 1280-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구직급여’ 사업(1995년~, 직접)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여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계획액 10조 9,170억 7,400만원 대비 1조 2,929억원(11.8%) 증액된 12조 2,099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구직급여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B-A)/ A
	당초	수정	당초	제1회 변경 (A)	제2회 변경안 (B)		
■ 구직급여	10,914,396	11,787,793	10,917,074	10,917,074	12,209,974	1,292,900	11.8

* 자료: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예술인,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도 취업하지 못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됨.¹⁰¹⁾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32,096원(4시간)~64,192원(8시간)임.

고용노동부는 2025년 당초 159만 6,106명을 계획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했으나, 2025년 5월 말 기준 구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가 전년동기

101)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대비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18만 7,208명분에 해당하는 1조 2,9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¹⁰²⁾

[구직급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 내역(근로자)]

구 분	당초 계획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급자	1,596,106명	1,783,314명 (+187,208명)
1일 지급액	61,560원	61,560원 (변동없음)
지급일	112일	112일 (변동없음)
계획액	10조 9,170억 7,400만원	12조 2,099억 7,400만원 (+1조 2,929억원)

월별 구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5월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의 수는 2025년이 1,096,999명으로 2024년 1,056,522명 대비 40,477명(3.8%) 증가하였고, 동 기간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5년이 5조 3,666억 3,100만원으로 2024년 5조 39억 9,500만원 대비 3,626억 3,600만원(7.2%) 증가하였음.

102)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당초 계획과 동일함.

[2024·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수]

(단위: 명)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순누계)
2024	전체	619,147	630,840	660,178	667,265	651,810	1,065,833
	근로자	614,291	625,577	654,615	661,453	646,080	1,056,522
	예술인	1,980	2,204	2,319	2,380	2,289	3,788
	노무제공자	2,876	3,059	3,244	3,432	3,441	5,513
2025	전체	604,581	673,871	698,390	707,367	675,516	1,106,106
	근로자	600,021	668,768	692,934	701,618	670,048	1,096,999
	예술인	1,511	1,659	1,751	1,829	1,725	3,007
	노무제공자	3,049	3,444	3,705	3,920	3,743	6,096

* 자료: 고용노동부

[2024·2025년 구직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24	전체	945,304	968,407	976,367	1,062,120	1,086,473	5,038,670
	근로자	939,154	961,937	969,599	1,054,668	1,078,637	5,003,995
	예술인	2,526	2,622	2,801	3,123	3,038	14,109
	노무제공자	3,624	3,848	3,967	4,328	4,799	20,566
2025	전체	980,996	1,079,659	1,057,925	1,164,762	1,118,252	5,401,594
	근로자	974,775	1,072,835	1,051,070	1,157,125	1,110,826	5,366,631
	예술인	1,941	2,094	2,028	2,299	2,209	10,571
	노무제공자	4,280	4,731	4,827	5,337	5,217	24,392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2024년도 당초 계획액과 유사하게 10조 9,17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2024년도 당초 계획액: 10조 9,143억 9,600만원), 2024년에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증가로 11조 7,877조 9,300만원으로 계획액을 자체변경하였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구직급여 사업비는 12조 2,099억 7,400만원으로 2024년 수정액인 11조 7,877억 9,300만원 대비 3.6%(4,221억 8,100만원)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2024년 1~5월 대비 2025년 1~5월

구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의 증가율인 3.8%와 유사한 값임.

즉, 현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1조 2,929억원을 추가 편성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예상되는 추가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급여의 재원인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가 2020~2024년 동안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구직급여 지출액 증액 시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가 겨우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근로자계정)]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당초	제1회 기금변경	제2회 기금변경안
총계	수 입	198,358	200,074	187,621	185,409	192,216	218,568	218,568	218,568
	지 출	204,653	210,577	180,647	170,591	186,456	193,113	193,267	206,297
	재정수지	△6,295	△10,503	6,974	14,819	5,759	25,455	25,301	12,271
	적립금	66,996	56,487	63,379	78,196	83,945	109,399	109,246	96,216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 입	61,884	51,691	51,696	41,238	42,757	47,578	47,578	47,578
	지 출	65,706	66,325	39,182	27,101	34,711	35,325	35,478	35,579
	재정수지	△3,822	△14,634	12,513	14,137	8,046	12,254	12,100	11,999
	적립금	27,800	13,163	25,658	39,794	47,835	60,088	59,940	59,833
실업 급여 계정	수 입	136,287	148,141	135,675	143,879	149,105	170,528	170,528	170,528
	지 출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2	157,586	157,586	170,515
	재정수지	<u>△2,573</u>	<u>4,003</u>	<u>△5,650</u>	<u>573</u>	<u>△2,437</u>	<u>12,941</u>	<u>12,941</u>	<u>12</u>
	적립금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48,024	48,029	35,095

*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계정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위 표는 근로자계정만 나타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은 대량의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³⁾

그러나 2020년부터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액이 급증하여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조 740억원 차입하였는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 상환 예정금액은 7조 7,208억원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액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는 제2회 기금계획변경안 기준으로 7조 7,196억원 적자(=12억원-7조7,208억원)로,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됨.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자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3)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
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통합고용정책국]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일반회계, 1339-301)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2019년~, 직접)은 소득활동을 하
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및 생계보전을 위하여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의 경감)¹⁰⁴⁾를 근거로 함.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217억 8,900만원 대비 127
억 7,200만원(58.6%) 증액된 345억 6,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21,789	21,789	34,561	12,772	58.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자영업자(1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근로하거나 고용보험 피
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여성 등을 지급 대상으로

1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
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며,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적용제외	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②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비임금근로자		

출산급여 대상

- (지원수준)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 기준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사업주 확인서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사업주 확인서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 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 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 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⑥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면밀한 수요예측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기할 필요 〉

본 추경안은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인원의 증가¹⁰⁵⁾ 등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출산급여 지원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2025년 예상 예산부족분 127억 7,200만원(인원 기준 8,515명)을 증액하였음.

- 2025년 예상 예산부족분은 2024년 월평균지원인원(1,156명)¹⁰⁶⁾에 전년동기(1분기)대비 지원인원 증가율(36.6%)을 적용한 인원(1,579명)에 대해 2025년 6월 이후 매월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본 사업예산 대비 부족한 금액임.¹⁰⁷⁾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추경안	산출내역
34,54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4,103백만원 가. 기존 지원 (17,218백만원) · 11,479명 × 150만원 = 17,218백만원 나. '24년 예산부족분 (4,113백만원) · 2,742명 × 150만원 = 4,113백만원 다. '25년 예상 예산부족분 (12,772백만원) · 8,515명 × 15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8백만원 · 305명 × 150만원 = 458백만원

동 사업은 시행초기 사업의 낮은 인지도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105) * '22년 10,451명 → '23년 10,492명 → '24년 12,622명 → '25.5월 9,012명

106) '24년 평월(2~7월) 기준 월평균지원인원

107) ○ '25년 예상 예산 부족분 : 12,772백만원* (인원 환산 시 8,515명)

*연간 예상 집행액**(34,561백만원) - 예산액(21,789백만원) = 12,772백만원

1~5월 집행액(17,981백만원) + 6~12월 예상 집행액(16,580백만원=1,579명*×150만원×7개월)

*** (6~12월 월평균지원인원) '24년 평월(2~7월) 기준 월평균지원인원(1,156명)×지원인원 증가율(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36.6%) = 1,579명

이후 정책 홍보 강화에 따른 사업인지도 확대로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9~2024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37,500	47,208 (21,608) ¹⁰⁸⁾	24,899	12,776	15,572	17,676
집행액	6,524	18,949	17,815	12,775	15,560	17,647
집행률	17.4	39.9 (87.7)	71.5	99.9	99.9	99.8

또한, 2025년도 5월 기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82.5%에 달하여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바, 출산급여의 적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지원률· 집행률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인 원	11,784	2,432	1,561	1,608	1,637	1,774	9,012	76.5
예 산	21,789	8,381	2,519	2,382	2,315	2,384	17,981	82.5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을 거의 소진했던 2023년과 2024년의 1월~5월의 지원인원 비율이 6월~12월까지의 지원인원 비율보다 높거나 유사함. 이는 연말 예산 소진의 영향으로 상반기 신청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0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예산 이용(472억원→216억원, △256억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동 사업의 2025년 6월 이후 지원인원에 대해 5월까지의 지원인원 9,012명 대비 약 23% 증가한 11,053명을 반영하여 예산부족액을 산출하고 있는바, 상반기에 지원인원 비율이 높은 최근 2개년의 추이에 비취보았을 때 지원인원을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2~2025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월별 지원인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1월	848	1,580	1,745	2,432
2월	734	1,130	1,045	1,561
3월	1,099	1,007	1,196	1,608
4월	781	850	970	1,637
5월	1,196	950	1,294	1,774
소계	4,658(45%)	5,517(53%)	6,250(50%)	9,012(45%)
6월	845	854	1,207	1,579 ¹⁰⁹⁾
7월	923	732	1,221	1,579
8월	845	623	734	1,579
9월	717	561	643	1,579
10월	177	533	825	1,579
11월	400	652	659	1,579
12월	1,886	1,020	1,083	1,579
소계	5,793(55%)	4,975(47%)	6,372(50%)	11,053(55%)
총계	10,451	10,492	12,622	20,065

고용노동부는 2024년 평월(2~7월) 기준 월평균지원인원에 전년동기(1분기) 대비 증가율을 반영한 인원을 2025년 6월 이후 월평균지원인원으로 일괄 반영하여 소요예산예상액을 산출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추경안 편성을 위해 6월 이후 지원인원을 추계하면서 전년도

109)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월별 예상 지원인원

2월~7월 월평균지원인원¹¹⁰⁾을 기준으로 지원인원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¹¹¹⁾ 보다 정확한 수요산출을 위해서는 하반기 지원인원이 상반기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지원인원의 증가추세¹¹²⁾로 예산 소진의 속도가 빠르고,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및 생계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예산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편성될 필요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0) 2024년 2월~7월 월평균지원인원은 1,156명으로 2024년 1월~12월 월평균지원인원 1,052명보다 높음.

111) 고용노동부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6월 이후 지원인원을 추계하면서 예산 소진의 영향이 적은 전년도 2월~7월 월평균지원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인원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112)(전년대비 지원인원 증가율) '22년 $\Delta 9.6\%$ → '23년 0.4% → '24년 20.3% → '25.5월 44.2%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돌봄서비스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801억 6,100만원 대비 160억원(2.8%) 증액된 5,96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 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0,161	580,161	596,161	16,000	2.8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498,116	498,116	498,116	-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8,116	478,116	478,116	-	-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0,000	20,000	20,000	-	-
· 돌봄서비스훈련	35,000	33,100	33,100	33,100	-	-

· 일반고 특화훈련	49,230	45,557	45,557	61,557	16,000	35.1
· 평생크레딧	25,000	-	-	-	-	-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	-	-	-	-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1,000	900	900	900	-	-
· 운영비 등	1,488	2,488	2,488	2,488	-	-

* 자료: 고용노동부

〈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55억 5,700만원 대비 160억원(35.1%) 증액된 61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A)	2025년 제1회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4,906	580,161	580,161	596,161	16,000	2.8
· 일반고 특화훈련	49,230	49,230	45,557	45,557	61,557	16,000	35.1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역사업은 일반고¹¹³⁾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156~1,300시간

(약 10개월) 범위 내에서 직종별 전공교육, 창의적 체험활동¹¹⁴⁾을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함.

동 내역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시 예상 참여인원인 5,180명에 비해 실제로 올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7,000명에 달하기 때문이고, 이에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1,820명분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훈련비 35,177,380천원 · 5,180명×6,791천원=35,177,380천원	① 훈련비 47,537,000천원 · 7,000명×6,791천원=47,537,000천원
② 훈련장려금 10,360,000천원 · 5,180명×200천원×10개월=10,360,000천원	② 훈련장려금 천원 · 7,000명×200천원×10개월=14,000,000천원
③ 조정재원 (19,620천원)	③ 조정재원 (20,000천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동 내역사업 참여 희망자가 예상보다 더 증가한 이유를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연도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6년 출생아 수는 451,759명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2007년 출생아 수는 496,822명으로 2006년에 비해 2007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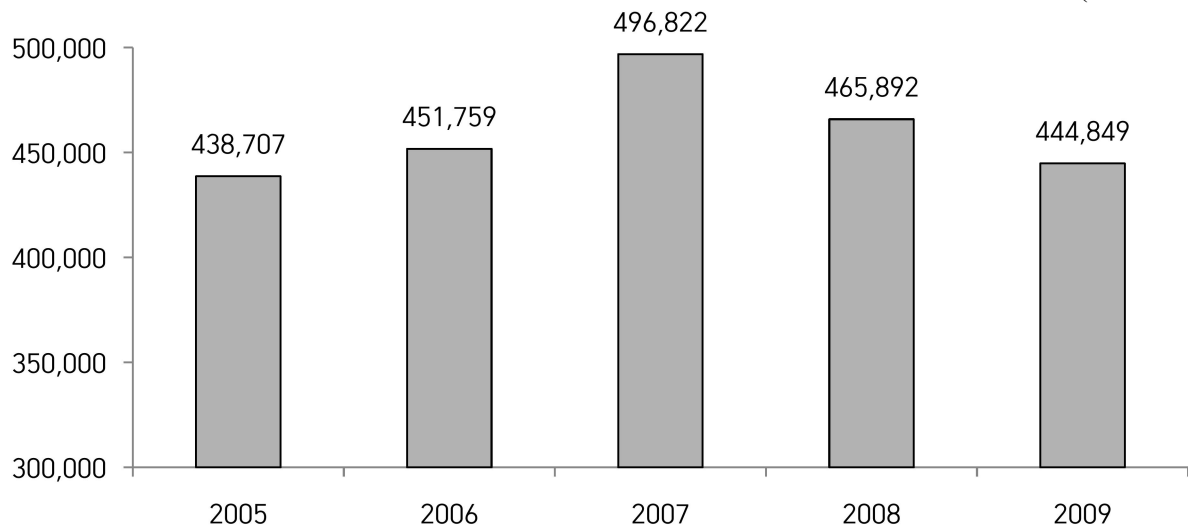
113) 일반고 외에도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에 다니는 학생이나 17~19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음.

114) 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알 수 있고, 이에 올해 참여 희망 학생이 작년에 비해 급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2005~2009년 출생아 수]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7년의 출생아 수(올해 고등학교 3학년)가 인접 연도 대비 더 많고, 이에 사업 참여 희망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 수요를 충당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수료율과 취업률은 각각 89.3~90.9%, 61.7~71%로 나타났으나, 6개월 고용유지율과 1년 고용유지율은 각각 26.9~52.8%, 28.8~38.3% 수준으로 나타남.

[2019~2023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자 수 ¹⁾	8,332	7,110	6,917	6,815	5,544

중도탈락자 수 ²⁾	831	761	652	788	664
수료자 수 ³⁾	10,456	2,640	10,270	6,009	4,159
취업자 수 ⁴⁾	5,852	1,385	5,623	3,278	1,974
중도탈락률(%) ⁵⁾	10.0	10.7	9.4	11.6	11.9
수료율(%) ⁶⁾	90.9	89.3	90.4	90.4	89.5
취업률(%) ⁷⁾	61.7	63.2	70.4	71.0	68.5
고용유지율(6개월)(%) ⁸⁾	45.1	52.8	48.6	49.4	26.9
고용유지율(1년)(%)	31.0	33.5	33.7	38.3	28.8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

5)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참여자 수)×100

6)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조기취업훈련생 수)]×100

7) 취업률(%):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수료자 수-훈련 시작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100

8)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전체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과 1년 고용유지율이 각각 59.9~63.4%, 46.9~50% 수준인 것과 대비해 저조한 것임.

[2019~2023년 전체 내일배움카드 사업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자 수 ¹⁾	461,356	718,113	1,054,414	940,067	1,074,941
중도탈락자 수 ²⁾	19,754	72,046	97,345	85,172	94,837
수료자 수 ³⁾	388,092	611,513	925,116	895,927	969,370
취업자 수 ⁴⁾	103,937	153,108	254,579	229,675	223,476
중도탈락률(%) ⁵⁾	4.3	10.0	9.2	9.1	8.8
수료율(%) ⁶⁾	87.7	90.1	91.4	91.5	91.9
취업률(%) ⁷⁾	55.9	54.2	54.1	51.6	49.2
고용유지율(6개월) ⁸⁾	62.9	59.9	61.3	62.6	63.4
고용유지율(1년)	49.9	46.9	47.8	50.0	49.3

* 참고: 내일배움카드(일반), 내일배움카드(고보) 내 K-디지털 기초역량 사업 제외 참여자 기준

-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
 5)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참여자 수)×100
 6)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조기취업훈련생 수)]×100
 7) 취업률(%):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수료자 수-훈련 시작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100
 8)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참여 학생의 고용유지율이 다른 내
 일배움카드 사업 참여자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취
 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
 여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 편성에 따른 운영을 철
 저히 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숙련기술장려사업(일반회계, 1134-317)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숙련기술장려사업’(1982년~, 출연)은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 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숙련기술장려’, ‘기능경기대회’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37억 4,400만원 대비 91억 8,900만원(△27.2%) 감액된 24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숙련기술장려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 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숙련기술장려사업	40,057	33,744	33,744	24,555	△9,189	△27.2
· 숙련기술장려	22,497	19,201	19,201	10,012	△9,189	△47.9
· 기능경기대회	17,560	14,543	14,543	14,543	-	-

* 자료: 고용노동부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방지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숙련기술장려’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92억 100만원 대비 91억 8,900만원(△47.9%) 감액

된 10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숙련기술장려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A)	2025년 제1회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					
■ 숙련기술장려사업	40,057	40,057	33,744	33,744	24,555	△9,189	△27.2
· 숙련기술장려	22,497	22,497	19,201	19,201	10,012	△9,189	△47.9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 건립	12,561	12,561	9,625	9,625	436	△9,189	△95.5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역사업에는 숙련기술진흥원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숙련기술진흥원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전문 기관임.

현재 숙련기술진흥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1개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9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공사 기간 조정에 따라 연차별 소요 예산을 조율하기 위하여 2025년도 숙련기술진흥원 추가 건립 소요 예산 96억 2,500만원 중 91억 8,900만원을 감액한 4억 3,600만원만을 편성하였음.

정부가 예산을 대폭 감액한 이유를 살펴보면, 공사 설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초 2024

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대하여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5년 6월에서야 기본설계와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음.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기간 연장을 협의하여 총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2026년에서 2023년~2028년으로 연장하였음. 이로 인해 착공시기가 2026년 3월로 순연되었고, 공사비로 편성된 86억 2,600만원과 감리비로 편성된 5억 6,300만원, 총 9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함.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총사업 기간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총사업비 조정은 안전시공, 법령 제·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무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¹¹⁵⁾, 총사업 기간 연장으로

11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 제·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무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타당성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⑥ (생략)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타당성재

인하여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사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소요될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사업 단계별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대하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예산 불용과 이월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보험기금, 1153-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2001년~, 보조)은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계획액 1,192억 2,500만원 대비 101억원(8.5%) 증액된 1,293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계획액		2025년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수정	당초	제1회 변경 (A)	제2회 변경안 (B)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25,000	125,000	119,225	119,225	129,325	10,100	8.5
· 산업맞춤형	71,000	71,000	71,225	71,225	71,225	-	-
· 하이테크형	40,000	40,000	34,000	34,000	38,000	4,000	11.8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00	12,200	12,200	12,200	18,300	6,100	50
· 일반용역비	1,800	1,800	1,800	1,800	1,800	-	-

* 자료: 고용노동부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시행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크게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된 내역사업은 ‘하이테크형’과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임.

하이테크형은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로 ‘K-하이테크 플랫폼’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구분되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대상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훈련 시행 연차별로 차등하여 최대 총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 중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훈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최소 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진행하게 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내용]

구 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목 적	저탄소 등 산업 전환에 따라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근로자의 전환 직무분석 등을 통한 직무전환훈련 및 경력재설계 등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
훈련대상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재직자
지원내용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올해 신규 10개소 선정·지원하는 계획에 추가로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는 데 40억 원을 편성하고,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올해 계획한 100개 외에 50개를 추가로 선정하는 데 61억원을 편성하였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 내역]

2025년도 당초 계획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①하이테크형(산업전환): 14,0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u>14,000</u> 백만원 =기존25개소×400백만원 + 신규 5개소×800백만원	①하이테크형(산업전환): 180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u>18,000</u> 백만원 (+4,000백만원) =기존25개소×400백만원 + 신규 10개소×800백만원 * (변경) <u>신규 5개소 추가</u>
②대중소상생 아카데미: <u>12,200</u> 백만원 · 훈련운영비: 10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②대중소상생 아카데미: <u>18,300</u> 백만원 (+6,100백만원) · 훈련운영비: 15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 (변경) <u>신규 50개 프로그램 추가</u>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의 경우 높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산업전환 가속화에 따른 직무전환훈련 수혜대상 확대로 중소기업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에 고품질의 장기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훈련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경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고용노동부는 7~8월에 신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신규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선정을 거쳐 9월부터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로 제한됨.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향후 집행 계획]

7~8월	신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선정
9~12월	훈련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선정 단계에서 신규 훈련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따른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훈련 운영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노동정책실]

(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2012년~, 융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703억 5,200만원 대비 81억 2,900만원(11.6%) 증액된 784억 8,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 A
	당초	수정	당초	제1회 변경 (A)	제2회 변경안 (B)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40,190	76,918	70,352	70,352	78,481	8,129	11.6

*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체불사업주 융자’(이하 ‘사업주융자’)와 ‘체불근로자 융자’(이하 ‘근로자융자’)로 구분됨. 먼저 사업주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¹¹⁶⁾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상태 해

소를 도모하는 것임.

근로자용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¹¹⁷⁾을 지원하고 있음.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개요]

구분	체불사업주 용자('12.8월~)	체불근로자 용자('21.6.9. 시행)
지원형태	용자	용자
지원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체불 ② 체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용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용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 (1천만원 한도)
용자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동 사업은 2021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하면서 소득요건 제한을 삭

116)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117) 1천만원 한도

제함으로써 용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및 용자요건 완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용자 인원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종전에는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했으나, 2024년 2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개정으로 동 요건을 삭제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체불사업주가 용자를 쉽게 신청하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연혁]

시행시기	세부내용
2021.2.10.	-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당 6백만원 → 1천만원
2021.6.9.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제도 이관 및 대상 확대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 - 소득요건 제한(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 확대
2023.7.1.	-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1억원 → 1.5억원, 근로자당 1천만원 → 1.5천만원 - 용자요건 완화 : 1년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무관 -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1.1.	- 근로자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8.7.	- 용자사유 완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용자사유 폐지

* 자료: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주 용자 활성화 필요 및 용자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

최근 5년(2020~2024)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을 보면, 2020년 총 192억 4,000만원의 용자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2024년 769억 1,800만원의 용자가 집행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2024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사업주 용자			근로자 용자	
	근로자	용자금액	사업장 수	근로자	용자금액	근로자	용자금액
2020	5,344	19,240	585	5,344	19,240	-	-
2021	7,020	40,979	555	4,178	21,255	2,842	19,724
2022	5,758	33,177	342	2,678	14,259	3,080	18,918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2024	10,640	76,918	668	5,695	39,806	4,945	37,11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① 2025년 5월 말 기준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집행 실적이 전년 동기 집행실적과 유사한 추이로 2025년 결산액도 2024년 결산액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②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확정 이후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한시금리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 있어¹¹⁸⁾ 이에 따른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하여 81억 2,9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4년 1~5월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집행액은 총 322억 5,4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주용자 170억 4,900만원, 근로자용자 152억 500만원이

118) 사업주용자 1%p(담보 연2.2%→ 1.2%, 신용·연대보증 연3.7%→ 2.7%), 근로자용자 0.5%p(연1.5%→ 1.0%) 예정

집행되었음. 2025년 같은 기간에는 총 328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 동기 집행액 대비 6억 1,000만원(1.9%)이 증가하였음.

[2024년, 2025년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월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합계	6~12월 합계	총계
2024년	4,996	8,290	6,926	5,485	6,557	32,254	44,664	76,918
사업주	1,817	4,628	4,257	2,797	3,550	17,049	22,757	39,806
근로자	3,179	3,662	2,669	2,688	3,007	15,205	21,907	37,112
2025년	6,050	5,534	6,062	8,388	6,830	32,864		
사업주	3,015	3,231	3,721	5,228	4,719	19,914		
근로자	3,035	2,303	2,341	3,160	2,111	12,95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2025년의 집행 추이와 함께 향후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추가 용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21년~2024년의 체불청산지원 용자사업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근로자용자의 당초 계획액 대비 결산액의 증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사업주용자가 각각 당초 계획 대비 △28.3%, △14.6% 적게 집행되었고, 근로자용자는 당초 계획 대비 74.9%, 157.0% 더 많이 집행되었음.¹¹⁹⁾

[사업주·근로자용자별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 증감률 현황]

119)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두 유형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시 사업주용자와 근로자용자의 당초 계획액(안)을 구분하여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받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당초 계획액과 실제 결산시 집행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입장임.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증감률 [(B-A)/A]	근로자 증감률 [(D-C)/C]
	당초 (A)	집행 (B)	(B-A)	당초 (C)	집행 (D)	(D-C)		
2021	18,046	21,255	3,209	5,964	19,724	13,760	17.8	230.7
2022	19,895	14,259	△5,636	10,815	18,918	8,103	△28.3	74.9
2023	29,964	25,579	△4,385	18,369	47,207	28,838	△14.6	157.0
2024	23,535	39,806	16,271	16,655	37,112	20,457	69.1	122.8

이때 정부가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보다 사업주가 사업주용자를 활용하는 것이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근로자용자를 받았다고 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므로,¹²⁰⁾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중 ‘사업주용자’의 집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용자와 달리 사업주용자는 ‘사업주의 자체적인 체불 청산’ 의미가 있어 지속적인 제도 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주용자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주용자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0) 근로자용자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용자(생계안정목적의 대여)를 실시하는 것인바, 용자 이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임.

한편, 사업주용자의 회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사업주용자의 누적 미상환액은 2020년 185억 8,200만원에서 2024년 483억 2,300만원으로 297억 4,100만원(160.1%) 증가하였음.

[사업주용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용자액	누적 용자액	상환 예정액	누적 상환 예정액(A)	실제 상환액	누적 상환액(B)	누적 미상환액 (A-B)	누적 회수율 (B/A)
2020	19,240	72,856	14,001	39,132	6,285	20,550	18,582	52.5
2021	21,255	94,111	17,058	56,190	9,254	29,804	26,386	53.0
2022	14,259	108,370	19,418	75,608	13,247	43,051	32,557	56.9
2023	25,579	133,949	18,522	94,130	10,974	54,025	40,105	57.4
2024	39,806	173,755	15,698	109,828	7,480	61,505	48,323	56.0

* 자료: 고용노동부

비록 2024년 사업주용자의 누적 회수율(56.0%)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30.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용자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향후 누적 미상환액의 증가가 큰 폭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용자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용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본부]

(1) 진폐위로금(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진폐위로금 지급’(1985년~, 위탁)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①진폐재해위로금, ②장해위로금, ③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37억 2,500만원 대비 450억 4,900만원(53.8%) 증액된 1,287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 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진폐위로금 지급	86,828	83,725	83,725	128,774	45,049	53.8
· 진폐재해위로금	22,548	28,983	28,983	28,983	-	-
· 장해위로금	22,365	22,546	22,546	67,595	45,049	199.8
· 유족위로금	30,246	32,196	32,196	32,196	-	-

* 자료: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란 8대 광업¹²¹⁾ 등에 종사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로, 진폐는 요양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 판정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진폐위로금을 지급함.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¹²²⁾에 근거하여 진폐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은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지만(2010. 5. 20. 법률 개정, 2010. 11. 21. 시행을 통해 근거규정 삭제), 관련 부칙에 따라 삭제 이전에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었거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¹²³⁾.

121)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황석

122)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123) 부칙 제1조·제3조 (생 략)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 법원 판결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 〉

최근 대법원은 진폐 요양 중 장해 인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진폐 진단일이 아닌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구체적으로 3심 및 파기환송심¹²⁴⁾은 ①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는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및 2017. 9.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점, ③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¹²⁵⁾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

12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40266 판결

다고 판시하였음.¹²⁶⁾

이후 최초사건과 유사한 후속사건이 대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 패소로 확정¹²⁷⁾¹²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① 현재 평균임금 정정을 이유로 한 소제기 후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장해위로금 49억 1,100만원, ②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지급 신청건에 대한 장해위로금 401억 3,800만원이 추가적인 진폐위로금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450억 4,9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진폐위로금 산출내역]

- | |
|--|
| <p>① 평균임금 정정 소제기 사건에 대한 차액: 4,911백만원
⇒ 287명(수급자) × 17,111천원(평균단가)
* (수급자) 동일한 사례로 소제기 사건 피해자 수
* (평균단가) 수급자 전체 평균차액 17,111원(4,911백만원÷287명)</p> <p>② 동일한 사례 해당 근로복지공단 접수 건에 대한 차액: 40,138백만원
⇒ 2,021명(수급자) × 19,860천원(평균단가)
* (수급자) 동일한 사례로 공단 접수된 청구 건 피해자 수
* (평균단가) 수급자 전체 평균차액 19,860천원(40,138백만원÷2,021명)</p> |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진폐위로금 지급 대상자들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0.11.21.) 이전 진

125)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126)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40266 판결 참고

127) 최초 사례에 대하여는 현재 피고(공단) 재상고 중으로 현재 본안심리 중이나, 이후 평균임금 정정에 대한 후속사건들을 보면, 2심에서 최초사건 파기환송심 판결내용과 동일한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공단의 패소가 확정된바 있음.

128) 상고심 총 17건('25.3월 4건, 5월 10건, 6월 3건) 공단패소 확정

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장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인바,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위로금 차액지급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하여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진폐위로금 차액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2001년~, 출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50억원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현 계획액 4,817억 9,200만원 대비 150억(3.1%) 증액된 4,967억 9,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		2025년계획			증감	
	계획액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	제2회 변경안(B)	(B-A)	(B-A)/A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71,792	471,792	481,792	481,792	496,792	15,000	3.1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95,707	95,707	-	-	-	-	-
· 스마트안전장치보급확산	35,000	35,000	-	-	-	-	-
· 안전일터조성지원	-	-	110,707	110,707	110,707	-	-
· 안전동행 지원사업	322,000	321,997	332,000	332,000	332,000	-	-
· 건강일터조성지원	15,825	15,824	35,825	35,825	50,825	15,000	41.8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260	3,124	3,260	3,260	3,260	-	-

* 자료: 고용노동부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가가 의결한 바에 따른 정확한 집행과 추 가경정예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

해당 증액은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계획액이 358억 2,500만원에서 508억 2,500만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것임.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지원비율: 50 ~ 70%)하는 사업으로, 지원물류센터(창고)나 생활폐기물 사업장 등 환기장치가 열악하거나 불량하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내 작업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①환기설비(산업용 냉풍기·제트팬·실링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②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10,000개의 사업장에 ③온열질환 응급 키트(Kit)를¹²⁹⁾ 보급하는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시기 가속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취약근로자가 급증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하여 사업장 수요가 높은 온열질환 예방장비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¹³⁰⁾ 내내역사업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 계획액을 150억원 증액하였음.

129) 구성품 예시 : 쿨매트, 쿨링액, 머리 냉찜질 세트, 식염포도당 등

130)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공통요구자료(Ⅱ-1) P.79

해당 증액분은 상반기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 공모에서 초과 신청으로 지원이 보류된 사업장과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될 예정임.

다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용노동부는 “ ‘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공모 결과 예산(140억원) 대비 197.5%초과 신청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¹³¹⁾ 해당 내내역사업인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의 증액안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안에 없었던 물품 구매에 집행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계획액 170억원에서 30억을 감액한 140억원만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배정하도록 하였음.¹³²⁾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미온적이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¹³³⁾ 오히려 집행과정에서 계획과 다르게 감액한 것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추경으로 증액한 후 고용노동부가 다른 내역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¹³⁴⁾

131)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공통요구자료(Ⅱ-1) P.80

132) 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시행(기획부-263) 붙임문서 가. 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 1-2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 나. 목표 > 사업물량 (온열질환 예방장비 140억원, 온열환경 개선설비 20억원)

133)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P.22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4P0U9I0D2U1G6J4H6A1Z7O6Z4O2)

134) 다만, 고용노동부는 온습도계 구매를 위하여 해당 내역사업에서 감액한 30억원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사업계획 추진지침을 변경하여 해당 차액을 동 내역사업에 재배정함

[건강일터조성지원 내역사업별 기금계획운용안과 실제 집행지침 비교]

내내역사업명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환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계획 추진지침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계획 추진지침
계획액	<u>170억원</u>	<u>140억원</u>	20억원	
사업장 최대 지원 금액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재구성

둘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환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계획액이 20억원이었으나, 지원 결정금액이 5억 2,900만원에 그침.¹³⁵⁾ 해당 내내역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설업이 제외된 일부 업종의 특정 형태 사업장에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¹³⁶⁾

또한,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135) 신청 후, 지원결정이 완료된바(2025년 5월말 기준) 해당 설비가 폭염 대비설비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도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업명	공모결과(지원결정)		
	사업장수	금액	진도율
온열 설비	42개	5.29억원	26.5%

136)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P.22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4P0U9I0D2U1G6J4H6A1Z7O6Z4O2)

하여 8월에 최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6월 공모를 통해 7월 보조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공모 계획이 지체되어 각 사업장에서 설비 및 시설 구비의 차질로 폭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공모부터 사업장 선정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월별 발생현황]

(’25년 3월말 승인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6월	7월	8월	9월
온열질환자	63	1	16	37	9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 사업장이 폭염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V.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세출예산 3,787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첫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기승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3,287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초급속 메가 충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17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예천지구 내 형성된 지장목으로 인해 유수의 흐름 방해 및 하천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설계비는 2025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148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2개 기금에서 7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I 유형 중 선발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사업 참여를 위해 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은 ‘노동행정 특화 AI’ 개발·운영을 통해 AI를 활용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대상자, 출생자 추이 등 추계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으로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Ⅵ. 심사결과

1. 환경부 소관

수정가결

2. 고용노동부 소관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부대의견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는 ‘AI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단가가 실집행 단가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단가가 적절한지 재검토한다.
-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에서 홍수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AI수문관측소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는 낙동강 예천지구 내 형성된 지장목으로 인해 유수의 흐름 방해 및 하천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유수지장목제거를 위한 설계비는

2025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

-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경부는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국고보조가 중단되어 지방하천 제방정비 사업 등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하천 정비 추진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

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는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 환경부는 주차장, 관리소, 야영장 등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유지 매수를 위한 추경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종류별·단계별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보전·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는 향후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대상자, 출생자 추이 등 추계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구지역본부 관할의 사업장 수, 훈련 수요, 자격검정 수요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구동부지사 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장려사업 감액 추경의 원인인 공사 착공 지연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산업전환 대응 필요성이 올해 갑자기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 추가로 공동훈련센터 모집·공고·지정, 훈련생 모집 등을 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성과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이 대기업 간접지원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과 확인을 위한 지표 체계화 및 편중 여부를 점검·공시하고, 훈련 운영기간이 제한된 만큼 선정 절차 내실화 및 사전안내·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근로복지공단 진폐위로금 내부 지침, 지급 관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유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가 증액편성한(150억원)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의 90%가 이동식 에어컨이므로 이동반경이 넓은 조선소나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신청이 필요한 해당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추경의 필요성이 상쇄되지 않도록 신속한 장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 장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노동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냉방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 열악한 야외작업환경, 작업 중지 미보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부(전력요금), 기재부(예산편성), 행안부·지자

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온열질환 대응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ESG 경영 중 기후변화로 E 대응에 따른 S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하청·협력업체의 상생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대기업에게 선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IX. 별 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I.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 원안 유지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일반회계	2,300	-	2,3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6,440	-	346,440
		환경개선특별회계	29,998	-	29,9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4,897	-	14,89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합 계		393,635	-	393,635

II.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

가. 환경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원안 유지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수자원종합연구 (5131-308)	3,188	-	3,188	3,488	300	○ 안동댐 수물로 단절된 도로(도산면 동부리 ~ 예안면 부포리)를 연결하기 위한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 증액	
2	물순환 촉진지원 (신규)	-	-	-	2,000	2,000	○ 물순환촉진 시범사업(영산강 지석천-덕남 정수장 연계 시설 설치) 예산 20억원 증액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	2,263,104	△467,250	1,795,854	2,124,571	327,717	○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350억원)·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2,927억 1,700만원) 신설 등 세부 사업 조정을 위해 3,277억 1,700만원 증액	
						1,000	○ ‘중형 전기화물 지원’ (신규)사업을 위한 10억원 증액	
2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1633-312)	928,423	△63,000	865,423	883,146	7,500	○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신규) 사업에서 ‘이동형 수소충전소’ 및 ‘제조식 충전소’ 등 신유형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한 75억원 증액	
						4,723	○ 내역사업인 ‘운영비’ (1,083억 8,300만원)에서 수소 충전소의 연료비 지원을 위한 47억 2,300만원 증액	
						4,000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초급속 메가충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급속충전기 예산 40억원 증액	
						1,500	○ ‘수소버스공차연료비’ (신규) 사업 15억원 증액	

(4)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1633-301)	48,953	-	48,953	66,653	17,700	○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315억 3,600만원)사업의 경우 2025년 7월부터 기존 4·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사업장 지원을 위해 177억원 증액	
2	자원순환 촉진지원 (1431-303)	20,623	-	20,623	29,123	8,500	○ 경기도 수원시 순환경제이용 센터 설립(신규)에 필요한 85억원 증액	
3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1432-305)	7,137	-	7,137	9,035	1,898	○ 내역사업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1억 2,100만원) 중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예산 18억 9,800만원 증액	
4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2204-302)	8,448	-	8,448	9,448	1,000	○ 내역사업인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21억 5,600만원) 에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실내환경개선공사를 전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5	생태·경관보전 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1832-305)	8,042	-	8,042	8,842	800	○ 국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감시체계 구축 비용 8억원 증액	
6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1133-308)	14,189	-	14,189	14,289	100	○ 내역사업 ‘새만금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 조사연구’ (9 억 6,100만원)에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입 확대 연구용역 1억원 증액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해당사항 없음

나. 고용노동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원안 유지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701	-	21,701	22,740	1,039	○ AI를 활용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 지원을 위해 노동행정 특화 AI에 10억 3,900만원 증액	
2	고용센터인력지원 (1031-300)	97,719	-	97,719	100,611	2,892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처우개선 권고 이행을 위한 직업상담원 명절상여금 증액과 민원업무지원비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28억 9,200만원 증액	
3	국민취업지원제도 (1234-300)	845,709	165,156	1,010,865	1,020,065	9,200	○ I 유형 중 선발형은 예산 부족으로 I 유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청년층의 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92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4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6,699	-	26,699	27,380	681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직 처우개선 권고 이행 및 공무원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통계조사관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8,100만원 증액	
5	고객상담센터운영 (7931-301)	24,040	-	24,040	25,125	1,085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직 처우개선 권고 이행 및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전화상담원 등에 대한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8,500만원 증액	

-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사항 없음

Ⅲ. 부대의견

가. 환경부(12건)

- 환경부는 ‘AI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단가가 실집행 단가와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단가가 적절한지 재검토한다.
-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에서 홍수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AI 수문관측소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는 낙동강 예천지구 내 형성된 지장목으로 인해 유수의 흐름 방해 및 하천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 지장목제거를 위한 설계비는 2025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
-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경부는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국고보조가 중단되어 지방하천 제방정비 사업 등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하천 정비 추진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이므로,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는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 환경부는 주차장, 관리소, 야영장 등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유지 매수를 위한 추경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종류별·단계별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보전·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 고용노동부(10건)

- 고용노동부는 향후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대상자, 출생자 추이 등 추계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구지역본부 관할의 사업장 수, 훈련 수요, 자격검정 수요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구동부지사 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장려사업 감액 추경의 원인인 공사 착공 지연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산업전환 대응 필요성이 올해 갑자기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 추가로 공동훈련센터 모집·공고·지정, 훈련생 모집 등을 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성과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이 대기업 간접지원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과 확인을 위한 지표 체계화 및 편중 여부를 점검·공시하고, 훈련 운영기간이 제한된 만큼 선정 절차 내실화 및 사전안내·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근로복지공단 진폐위로금 내부 지침, 지급 관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유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가 증액편성한(150억원)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의 90%가 이동식 에어컨이므로 이동반경이 넓은 조선소나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신청이 필요한 해당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추경의 필요성이 상쇄되지 않도록 신속한 장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 장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노동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냉방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 열악한 야외작업환경, 작업 중지 미보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부(전력요금), 기재부(예산편성), 행안부·지자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온열질환 대응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ESG 경영 중 기후변화로 E 대응에 따른 S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하청·협력업체의 상생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대기업에게 선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